

貿易學碩士 學位論文

麻藥類 密輸動向 分析과 供給遮斷을 위한
關稅國境 管理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Recent Drug Trafficking trend and Measures
for Supply Blocking at Customs border



指導教授 辛 容 尊

2013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國際關稅學科

張 光 鉉



본 論文을 張光鉉의 貿易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金 在 棒 (印)

委 員 金 煥 成 (印)

委 員 辛 容 尊 (印)



2013年 6月 21日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표 목차	iv
그림 목차	v
Abstract	vi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마약류 범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마약류 개요	5
1. 마약류의 기원과 역사	5
2. 마약류의 정의 및 특징	6
3. 마약류의 분류	8
제2절 마약류 범죄의 특징	11
1. 막대한 불법수익 발생	11
2. 국제화 조직화 양상	13
3.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존재	15
4. 단속과 치료에 막대한 비용 발생	16
제3절 마약류 남용이론 및 비범죄화 논의	18
1. 범죄 및 마약류 남용 이론	18
2. 마약류 비범죄화 논의	20

제3장 세계 마약류 동향과 국제 마약류 단속체계

제1절 세계 마약류 동향	25
1. 세계 마약류 불법생산 및 밀거래 동향	25

2. 아태지역 마약류 동향	31
3. 주요 국가 마약류 동향	32
제2절 국제 마약류 통제규범 및 단속기관	42
1. 마약류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	42
2. 유엔의 마약류 관련기구	43
3. 마약류 원료물질 통제	46
4. 범죄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 대응	47
5. 세계관세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49
6. 주요 국가 마약류 단속체계	52

제4장 국내 마약류 범죄 실태와 밀수단속상 당면문제

제1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실태와 밀수동향 분석	59
1. 마약류 범죄 실태	59
2. 마약류 밀수동향	64
제2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단속체계와 통제전략	74
1. 마약류 단속법규의 변천	74
2. 국내 마약류 단속조직	76
3. 우리나라의 마약류 통제전략	81
제3절 관세행정 환경변화와 마약류 밀수단속상 당면문제	83
1. 마약류 단속기관으로서의 관세청	83
2.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단속환경 변화	85
3. 마약류 밀수 단속의 당면 문제점	87

제5장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방안

제1절 마약류 단속기능 강화	91
1. 조직 및 인력 확충	91
2.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	92

3.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개편	93
제2절 정보관리 강화 및 위험관리기법 활용	94
1. 마약우범자 정보관리 강화	94
2. 위험관리기법 활용	95
제3절 마약류 수사기법의 개발 활용	96
1. 관세국경 통제 수사기법 개발 활용	96
2. 금융수사기법 활용	99
제4절 단속 장비의 현대화와 단속마인드 제고	100
1. 마약류 단속장비 현대화	100
2. 세관직원의 마약류 단속마인드 제고	101
제5절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102
1. 국내기관과의 공조	102
2. 유관업체와의 협력 강화	103
3. 외국 단속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105
제6절 신종 마약류 출현에 대응한 신축적 대응	106
제7절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출입 효과적 차단	108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1
 감사의 글	113
참고문헌	115

표 목 차

<표 1> 마약류 사범의 형사사범 비용	16
<표 2> 전 세계 마약류 적발추이	26
<표 3> 미국 마약단속청의 연도별 주요 마약류 압수량	34
<표 4> 일본의 연도별 주요 마약류 압수량	37
<표 5> 최근 5년간 태국 내 양귀비 밀경작 면적 현황	38
<표 6> 태국내 주요 마약류 종류별 적발현황	40
<표 7> 2012년도 마약류 사범 유형별 단속현황	59
<표 8>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60
<표 9> 연도별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보호 현황	62
<표 10>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62
<표 11>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적발현황	65
<표 12> 관세청의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적발현황	68
<표 13> 한국경유 마약류 중계밀수 단속현황	69
<표 14>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검거현황	72
<표 15> 관세청의 마약류 원료물질 적발현황	73
<표 16> 우리나라 경찰청의 해외주재관 파견현황	79

그림 목차

<그림 1> 영국 내 마약류 거래 단계별 밀매가격	12
<그림 2> 마약류 범죄의 순환구조	14
<그림 3> 전 세계 불법 마약류 남용현황	25
<그림 4> 유엔의 마약류 관련기구	45
<그림 5> 우리나라의 FIU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48
<그림 6> WCO RILO의 기능 및 업무협력 체계도	50
<그림 7> 일본세관 National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 구성	55
<그림 8> 아프리카發 ATS 밀수 적발현황	67
<그림 9>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검거현황	72
<그림 10> 마약류 관련 법률의 변천	76
<그림 11> 우리나라의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77
<그림 12> 우리나라의 마약류 통제 및 관리 체계	82
<그림 13>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단속 체계도	84
<그림 14> 우리나라의 수출입, 해외여행자, 관세인력 변화추이	86
<그림 15> 관세행정상 신속과 정확 사이의 Trade-off 관계	87

A Study on Recent Drug Trafficking trend and Measures for Supply Blocking at Customs border

Gwang Hyeon JANG

Department of Customs and Tariff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Drugs such as opiates, cannabis, coca have been long used since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mainly for the purpose of disease treatment and religious observance. Recently, however, various kind of drugs under prohibition has been more and more abused illicitly among a large number of peoples around world in pursue of temporal pleasure.

Illicit drugs not only destroy individuals' mental and physical health but also induce crimes, which as a result has become one of the most worrying social problems across the world. With the recognition of such harmful effects of drugs on society, there have been immense efforts on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o suppress illicit supply and demand of drugs.

We are well aware that drug crimes can not be eradicated by the effort of a single country since it has become transnational and organized criminal activities. Therefore,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have launched the 'War against Drugs' and promoted information exchange and coordinated investigation to tackle drug problems.

Currently we are witnessing a worrying drug crime situation in Korea: drug transaction among individual abusers are increasing; trafficking of new psychoactive substances as well as traditional drugs such as methamphetamine and cannabis is continuing; and international drug syndicates continue to make ill use of Korea as a transit country for drug trafficking from sources to final markets.

Furthermore, drug enforcement authorities at borders are facing substantial challenges with the rapid increase in trade volumes, cargos, transportations, and passengers crossing borders as a result of deepening trade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creating additional challenges and causing it harder to control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Considering that most of illegal drugs distributed in Korea are smuggled and supplied from overseas, one of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illicit drugs in domestic market is to intercept them at the front-line of Customs borders.

Responding to the needs of integrated and strategical response upon these challenges, this study seeks for possible counter-measures to efficiently cope with drug trafficking at borders as below.

First, expansion of specialized investigators and establishment of exclusive drug task forces in order to strengthen drug enforcement in Customs authority and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s between drug enforcement authorities.

Second, setting-up a collaborated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ystem to support drug enforcement by sharing drug crime records and relevant intelligence accumulated in enforcement authorities through the system.

Third, adapting of special investigation techniques such as controlled

delivery, undercover operation, behavior observation, interview, drug forensic, money laundering investigation, etc., as well as develop specialized techniques for drug detection concealed in export and import cargo, mails, express consignments, passenger luggage, transportation, and even in human body.

Forth, furnishing and putting up-to-dated inspection machine, identification kit, and analysis equipment for inspectors to timely use at customs check points in response of tremendous increase of cargo crossing border.

Fifth, structuring close cooperation among drug enforcement authorities both in domestic and abroad to effectively cope with complicated link of production, supply, smuggling, and use of illicit drugs as well as the globalization and organization of drug related crimes.

Sixth, a prompt and flexible system for analysis, risk evaluation, registration in control list, and alarming for the prevention of illicit use of new psychoactive substances.

Lastly,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mechanism of precursor chemical control to prevent illegal conversion of those chemicals into illicit drug manufacture.

Upper suggested counter-measures for drug supply cutting should be flexibly operated in consideration of drug crime situation and conditions of competent authorities.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마약류는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 종교 의식용 또는 질병치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일시적 쾌락과 자기만족을 얻기 위한 마약류의 불법적 오남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마약류 남용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UN과 세계 각국은 불법 마약류의 밀거래와 남용의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단속과 중독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기준 전 세계 15~64세 사이 성인인구의 5%에 해당하는 약 2억3천만 명이 연중 한 번 이상 불법 마약류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0.6%에 해당하는 약 2천7백만 명은 상습적 사용자였다고 한다(UN World Drug Report 2012).

우리나라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1990년대 이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 마약류의 국내 밀조가 거의 근절되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남용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밀수에 의해 해외로부터 공급되고 있다. 2012년에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총 50.1kg 이었는데, 이 중 메트암페타민 등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합성 마약류가 35.1kg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마초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미국이나 유럽 등 마약류의 남용이 심각한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마약류 남용자 비율이나 마약류의 압수량 등이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성공적인 마약류 퇴치 성과에 힘입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마약퇴치의 모범 국가이자 마약 청정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검거되는 마약사범수와 마약류 압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조직밀수와 함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자가 소비용 직접밀수가 적발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양상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관세청, 마약류

밀수동향 2012).

또한, 최근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처방 등 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향정신성 마약류가 함유된 비만 치료제의 남용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3위라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불법 마약류가 암암리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INCB Report 2006).

마약류 오남용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황폐화 시키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해악을 야기하며, 마약류 범죄의 단속과 중독자의 재활, 치료, 교정 및 남용 예방에는 많은 예산이 들고 마약류 투약에 따른 노동력 상실, 가정파괴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손실비용이 2008년도 기준 1,6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 2008).

미국의 경우 연간 마약류 사용자가 4천만 명을 상회하고, 마약류 사범 수 160만 명, 수감자 수 50만 명(2010년), 연방정부 마약류 통제 예산 260억 달러(2012년), 마약류 남용에 따라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 1,930억 달러(2007년) 등 마약류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다(미국 ONDCP, 2012).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마약류 밀수가 초국가적 조직범죄 양상을 나타내고 밀수수법 또한 날로 치밀하고 지능화 되고 있어, 어느 특정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상호주의적(Bilateral) 또는 다자주의적(Multilateral) 규범에 따라, 불법 마약류의 생산과 공급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법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책은 그 나라의 마약류 오남용 실태, 국민의 법 감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당해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대체로 공급차단, 수요억제, 그리고 재활치료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우리나라의 마약류퇴치 전략도 외국으로부터의 공급차단, 국내수요의 감축, 그리고 중독자의 치료재활의 세 가지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남용이 일상화된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는 달리 마약류 남용률이 낮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금기의식과 마약류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커다란 해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강한 편이다. 또한, 국내에서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국제공항만 등 관세국경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밀수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관세국경(關稅國境)¹⁾에서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내확산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마약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과 화물 및 운송수단의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세국경을 통제하는 세관 등 정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이를 악용한 국제범죄 조직들의 끊임없는 마약류 밀수 기도는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관 등 국경통제 기관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신속한 물류 흐름과 마약류 반입차단이라는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단속 전략과 기법을 개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약류의 공급차단 측면에서 최근 국내외 마약류 밀수동향, 마약단속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및 국내외 단속기관의 단속전략을 살펴본 후, 해외의 주요 마약류 공급지로부터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류를 관세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마약류 범죄의 국제화 조직화 추세에 대응하여 해외로부터 국내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류를 관세국경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마약류의 개요와 마약류 범죄의 특성, 그리고

1)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경(國境)은 영토, 영공 및 영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당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하는 영역의 가장자리 경계를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관세국경(關稅國境)은 한 국가가 출입국 여객과 화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제와 원활한 조세징수 등을 목적으로 설정한 영역으로 통상 개항(開港)이나 통관장(通關場), 통관역(通關驛) 등을 의미한다.

마약류 범죄이론 및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비범죄화 논의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인 마약류 범죄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통제노력을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생산, 밀수, 밀매, 소비 등 일련의 범죄가 밀접하게 연결된 순환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라는 특성상 국내 동향뿐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에서 불법 마약류의 생산현황, 적발 동향, 국가별 마약류 남용실태 및 단속체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UN 등 국제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나 현지조사 등을 근거로 분석·작성한 마약류 관련 보고서, 국내외 마약관련 연구서 등을 통하여 전 세계 마약류 동향과 미국, 중국, 태국 등 심각한 마약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의 마약류 범죄 실태와 단속체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실태와 밀수동향에 대한 분석과 국내 마약류 단속체계와 통제전략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 소비되는 불법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의 밀수입에 의해 공급되고 있어 공급차단에 주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마약류 범죄의 예방 및 단속대책이라는 전제 하에,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밀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이 처한 관세행정 환경 변화와 밀수단속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관련문헌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무역자유화 등 글로벌화의 가속에 따른 국가간 교역량과 여행자 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이에 편승한 마약류 밀수의 고도화, 마약단속 인력과 예산상의 제약 등 관세행정이 당면한 환경 하에서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세국경 관리 개선방안을 문헌조사와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국경 관리 개선방안을 요약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등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2 장 마약류 범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마약류 개요

1. 마약류의 기원과 역사

마약류(麻藥類)는 오랜 옛날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약용 또는 종교의식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 아편에 관한 내용이 있고, 4세기경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질병 치료에 양귀비에서 추출한 액체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 또한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아편이 의료용으로 사용되었고 6세기경부터 양귀비의 재배가 이루어 졌으며, 중국은 인도로부터 전해진 아편을 7세기경부터 사용하였다.³⁾

대마의 사용 역사는 기원전 1만년 경 타이완에서 대마섬유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고,⁴⁾ 기원전 1500년경 인도의 경전에 대마초가 '행복의 근원'으로 웃음을 일으키는 식물이라는 기록이 있다.⁵⁾ 또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⁶⁾에는 기원전 2,737년 중국의 염제·신농제 시절에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뒤 기원전 800년경 이전에 인도에 소개되어 부처의 제자이자 외과 의사였던 기파(耆婆)가 대마의 마취성분을 수술에 이용했다고 한다.

아편, 대마와 함께 3대 주요 마약류의 하나인 코카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안데스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중앙 안데스의 잉카제국에서는 코카나무가

2) 신의기, 2003.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p.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이창기, 2004. 마약 이야기, p.21, 서울대학교출판부. 마약류를 한자로 '麻藥類'로 쓰는 사례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책의 주장에 따라 '麻藥類'로 표기하였다.

4) 조성권, 2012. 마약의 역사, p.25, 인간사랑.

5) 배성태, 2011. 마약류 실체, p.199, 도서출판 조은.

6) 중국 후한(後漢)에서 삼국시대 사이에 성립된 본초서(本草書)이며, 양(梁)나라 학자 도홍경(陶弘景)은 6세기 초에 이를 교정한 '신농본초경' 3권과 주를 단 '신농본초경집주' 7권을 각각 저술(자료: 두산백과).

종교적 의례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국가정책에 따라 이루어졌다.⁷⁾ 코카나무가 서유럽에 전파된 것은 1532년경으로 스페인의 잉카제국 침공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236년 고려 고종 때에 편찬된 현존 최고(最古)의 의학서인 향약구급방에 마자(麻子)가 약재로 사용된 기록이 있고, 1454년 조선 단종 때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대마와 앵속(罌粟)이 약재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611년 조선조 광해군 시절에 편찬된 동의보감의 탕액편(湯液篇)에도 아편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대마와 아편이 의료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⁸⁾

한편, 메트암페타민⁹⁾, MDMA, LSD 등 많은 종류의 합성마약류가 1900년대에 화학적으로 합성되어 널리 남용되기 시작했다. 메스암페타민은 1893년 일본의 화학자 나가이 나가요시에 의해 에페드린으로부터 합성되었고, 1919년에 약리학자 아키라 오가타에 의해 결정형태의 메스암페타민 합성이 성공하였다.

엑스터시(MDMA: Methylen-dioxy-methamphetamine)는 암페타민계 유기화학 물질로 1914년 독일의 메크로 화학회사에서 식욕억제제로 개발되었으나 거래가 되지 않다가, 1960년대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파티 마약으로 크게 남용되었다.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호밀이나 보리맥각 등 곡물의 곰팡이에 기생하는 맥각균(麥角菌)인 알카로이드나 나팔꽃의 씨앗에서 추출한 리설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성분을 합성한 물질로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는 마약류이다.

2. 마약류의 정의 및 특징

마약류(麻藥類)란 일반적으로 느낌이나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7) 배향자, 2007. 고려 및 조선역사에 나타난 마약관련 기록에 관한 연구, p.6,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8) 배향자, 위의 논문, pp.1-18.

9) 필로폰 또는 히로뽕 등으로 불리는 향정신성마약류의 일종으로 2012년 6월 7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종전의 ‘메스암페타민’을 ‘메트암페타민’으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고, 협의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지칭하며,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¹⁰⁾

마약류는 대뇌 중 마약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체(opioid)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특유의 효능을 유발하며 의료용으로는 주로 진통제나 마취제로 사용된다. 마약은 각 나라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검토한 오남용의 정도에 따라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에 의거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지정되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남용을 하게 되면 육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며 주로 환각이나 각성효과를 유발한다.¹¹⁾

마약류는 주로 진통이나 마취 목적의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오락용 또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오·남용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탐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약물남용은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이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¹²⁾

마약류는 뇌 속의 신경 전달물질로 사고력과 쾌감에 주로 관여하는 물질인 도파민을 강제로 배출시켜 순간적인 쾌감을 맛보게 하고, 한편으로는 도파민을 파괴하여 도파민 결핍을 유도하기도 한다.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면 쾌감을 느끼지만 과도해지면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상을 야기한다고 한다.¹³⁾

한편, 오기완 교수는 아편 남용에 따른 의존성을 약물투여를 중단하였을 때 나타나는 불쾌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물을 찾는 행동인 신체적 의존성과 약물 복용에 대한 강력한 욕구나 약물사용 조절의 어려움에 따른 정신적 의존성으로

10) 관세청, 2007. 세관직원이면 꼭 알아야 할 마약상식, p.15.

11)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서, p.4.

12) 신의기, 앞의 책, p.36.

13) 김희선, 2012. 마약류 관련제도 소개, 2012년도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 발표자료(2012.10.26).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⁴⁾ 또 미국의 한 연구소는 중독(addiction)을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있는 뇌(腦) 질환으로 투약할 경우 유해한 결과를 초래함에도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아 사용하려는 증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

세계보건기구의 마약류 의존성 전문가위원회(WHO 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는 제13차 회의에서 1960년대까지 마약류 복용과 관련하여 사용되던 마약남용(abuse), 습관성(habituatation), 중독(addiction)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유해한 사용(harmful use)'라는 약물의존성(Drug depend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16차 회의에서 마약류의 특성을 ①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 ②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을 나타내는 금단현상(禁斷現象) ③동일한 약물효과를 위해서 점점 복용량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내성(耐性) ④그 해악(害惡)이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害惡性)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⁶⁾

3. 마약류의 분류

3.1 법률에 의한 분류

일반인들은 메트암페타민(페로폰), 아편, 대마초 등 다양한 명칭의 마약류(麻藥類)를 흔히 마약(麻藥)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마약은 동법 제2조 2호에서 양귀비¹⁷⁾, 아편, 코카 잎(엽)과 그에서 추출되는

14) 오기완, 2010. Opioids: Blessing and Curse,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 세미나 발표자료(2010.9.7).

15)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10. Drugs, Brains, and Behavior; The science of addiction, p.5.

16)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Geneva.

17) 약 500여종의 양귀비 가운데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과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씨(Papaver Setigerum D.C.) 두 종류만을 통제대상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모르핀, 코데인, 데바인 등을 함유하기 때문이다.(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1. 국내 양귀비 현황 및 종식별).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등 34종의 알카로이드 및 이들과 유사한 위험을 지닌 메타돈 등 화학적 합성품 75종, 그리고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동법 제2조 4호에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LSD, 사일로신 등 36종)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메트암페타민, MDMA 등 41종)

다. 위에 열거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바르비탈 등 60종)

라. 다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프로포폴, 날부핀 등 68종)

마. 가~라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대마는 동법 제2조5호에서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효능에 의한 분류

마약류를 투여하게 되면 종류별로 인체에 미치는 효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통상 그 효능에 따라 억제제(depressants), 각성제(stimulants) 및 환각제(hallucinogens)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억제제 또는 진정제란 헤로인 등 아편계열의 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호흡, 혈압, 심장박동과 세포의 신진대사와 같은 활동을 억제하고, 황홀감과 행복감을 유발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의존성과 금단현상을 유발한다.

둘째, 각성제 또는 흥분제란 진정제와는 반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인체를 활성화 시켜주고, 투여하게 되면 맥박과 혈압의 상승, 동공확장, 공격성과 불안감을 촉발하게 되며, 일종의 도취감을 일으켜서 습관성이 되게 하고 만성 중독 시에는 환각을 일으켜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증세를 유발한다. 메트암페타민, 텍스트로암페타민, 레브암페타민 등의 암페타민류와 코카인, 메칠페니데이트 등이 있다.

셋째, 환각제는 현실의 왜곡과 같은 정신 상태를 유발하거나 기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약물로서 감각의 변화·망상·환각·환시·환청·환취·환촉 등을 야기한다. 환각물질의 역사는 세계 각지 원주민들의 종교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남용 약물로서는 1938년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최초로 엘에스디(LSD)를 합성하면서 비롯되었고 메스칼린, 싸이로시빈, 펜사이클리딘, MDMA 등이 있다.¹⁸⁾

3.3 생성원에 의한 분류

마약류는 생성원에 따라 대마, 코카, 아편 등과 같이 식물 등 천연물질로부터 추출된 천연마약류와 화학적 목적의 연구과정에서 우연히 합성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키 위하여 개발된 합성 마약류로 구분할 수도 있다.

천연 마약류는 양귀비, 코카나무, 대마초 등 자연 상태에서 생육하는 식물로부터 추출 가공되어 얻어지는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코카인, 해시시,

18) 중앙관세분석소, 2006. 마약 핸드북, p.61; 홍순오, 2006. 세관 정·첩보과정 교육자료, 국가정보대학원.

대마오일 등이 해당한다.

합성마약류는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만든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는 암페타민계 마약류(Amphetamine-type stimulant)인 메트암페타민, MDMA를 비롯하여 메사돈, 페치딘, 몰페리딘, 프로페리딘 등이 이에 속한다.¹⁹⁾

제2절 마약류 범죄의 특징

1. 막대한 불법수익 발생

글로벌화와 함께 마약밀거래, 인신매매, 불법무기거래 등 각종 범죄도 국제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불법 범죄수익도 천문학적 수치에 달하고 있다. UN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09년도 기준 범죄로 발생한 불법자금 규모는 전 세계 GDP의 3.6퍼센트에 달하고, 2.7퍼센트에 해당하는 1조6천억 달러가 합법적 수익으로 세탁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마약밀거래와 조직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2000~2009년 기간 연평균 6,500억 달러로, 2009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 세계 총 GDP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8,7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였다.²⁰⁾

마약류는 최초로 생산되는 공급지, 중간 경유지 및 최종 공급지에서의 불법 거래 가격 사이에는 수백~수천 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공급 조직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끊임없이 마약류 밀수와 밀거래를 통하여 막대한 불법수익을 추구한다. 마약류 밀거래 수익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관련 불법수익의 17~25%, 국제조직범죄 수익의 50%로 전 세계 총 GDP의 0.6~0.9%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시스템을 통해 세탁되는 불법 수익은 전 세계 총 GDP의 0.4~0.6%에 달한다고 한다.²¹⁾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등 마약류 주요 공급지의 밀거래 가격은 정확히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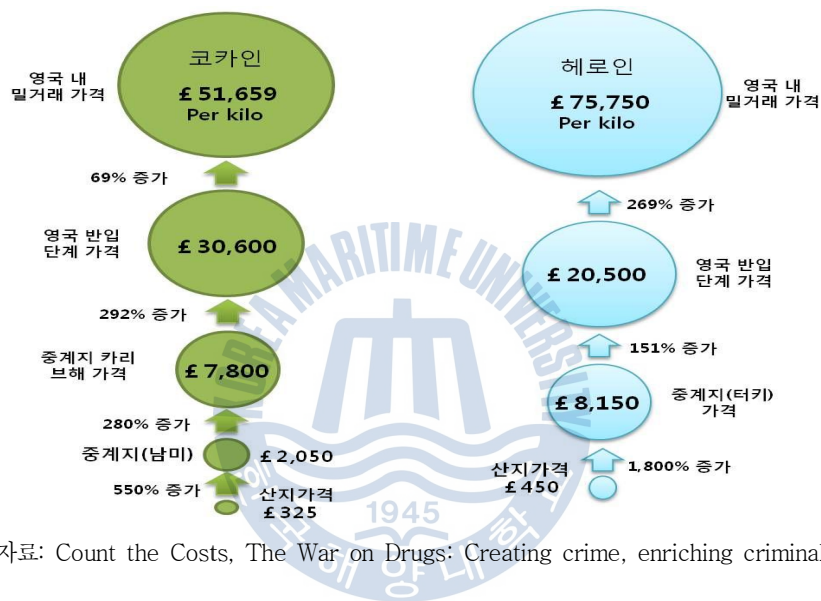
19) 관세청, 앞의 책, p.20.

20) UNODC(UN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1. Estimating illicit financial flows resulting from drug trafficking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Vienna, p.34.

21) UNODC, 위의 보고서, pp.31-32.

없으나, 메트스암페타민이 국내로 밀반입된 후의 그램당 밀매가격이 도매단계 15만원, 중간도매단계 37만원, 소매단계 83만원, 최종 소비단계인 1회 투약분량 (약 0.03g) 밀거래 가격이 10만원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급지로부터 밀수입되어 국내 최초 밀거래 단계인 도매단계와 최종 소비단계의 거래가격 간에 약 22.2배의 엄청난 불법수익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²²⁾

<그림 1> 영국 내 마약류 거래 단계별 밀매가격



영국의 한 마약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카인은 킬로그램 당 생산지에서 325 파운드, 남미 중계지에서 2,050 파운드, 카리브해 지역 중계지에서 7,800 파운드, 영국 도착 시점 30,600 파운드, 영국 내 밀거래 단계에서 51,659 파운드에 각각 거래되어 산지와 최종소비 단계의 가격 간에 159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헤로인은 킬로그램 당 생산지 가격이 450 파운드, 최종 소비자인 영국 내 밀거래 가격이 75,750 파운드로 산지와 최종 소비자의

22) 대검찰청, 2013. 마약류 월간동향 2012년 12월호, p.17.

가격 간에 무려 168배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다.²³⁾

한편, 2008년도 미국에서의 코카인 밀거래 규모는 350억 달러에 달했는데, 코카 생산자에게 전체 불법수익의 1.4%인 약 5억 달러, 공급지 내 밀거래자에게 4억 달러(1%), 멕시코 마약조직 등 국제 밀수조직에게 46억 달러(13%) 등 공급지 또는 중계지에서 전체의 15%인 54억 달러의 불법수익 발생했고, 그 나머진 296억 달러가 미국 내 불법수익이었다고 한다.²⁴⁾

2. 국제화 조직화 양상

UN은 국제조직 범죄화 되어 가는 마약류 밀수, 인신매매, 돈 세탁, 사이버 범죄, 무기 밀거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밀거래 등 각종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2000년에 '초국가조직범죄에 관한 UN 협약'²⁵⁾을 채택한바 있다.

최근 마약류 관련범죄도 날로 국제화·조직화 양상을 보여 제조·운송·배포·소비·돈세탁 등 일련의 과정에 해당분야 제조기술자·국제운송 및 배포전문가·국제금융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공급조직을 원천적으로 발본색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마약류 범죄는 밀경작, 원료공급, 제조, 국제운송, 배포, 소비 및 돈세탁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다. 천연 마약류의 경우 양귀비, 코카엽, 대마 등 마약류 원료는 황금의 삼각지대 등 빈곤지역 주민들에 의해

23) Count The Costs (www.countthecosts.org), 2011. The War on Drugs: Creating crime, enriching criminals, p.3. Count The Costs는 1961년 「UN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 및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마약과의 전쟁'이 야기한 문제점과 성과를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관련 비용을 분석하였다.

24) Haken & Jeremy, 2011. Transnational Crime In The Developing World, Global Financial Integrity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February 2011),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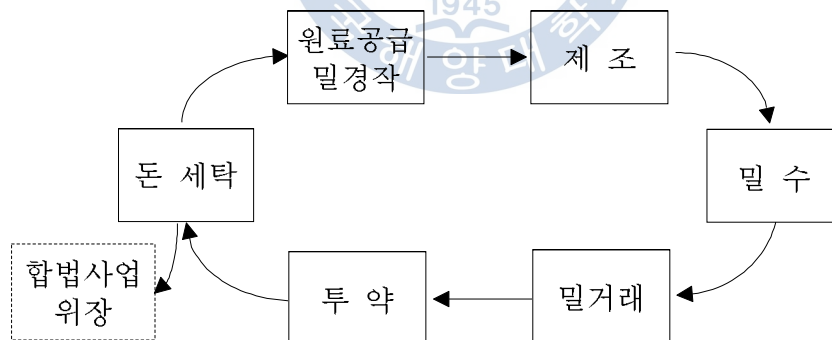
25) 유엔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nex I, Article 2. Use of terms (a))에서 조직범죄그룹(Organized criminal group)을 '일정기간동안 존속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규정된 한 가지 또는 일련의 중대범죄나 위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3명 이상으로 조직된 그룹'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동 협약은 국제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대한 정의는 유보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지역·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도 동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배 또는 채취되어 공급된다. 화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합성마약류 원료는 범죄조직에 의해 공업용 화학물질의 불법전용 등을 통하여 대규모로 조달되며, 이렇게 공급된 원료물질은 전문가들에 의해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쳐 제조되어 소비지로 이동한다.

세계 각지에서 소비되는 상당부분의 마약류는 주요 생산지에서 밀조되어 화물, 우편물, 여행자 등을 이용한 국제운송 과정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반입된 후 소비지에서 인수책, 도매, 중간도매, 소매, 최종소비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은밀하게 전달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마약류 판매대금은 합법적 소득원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돈세탁 과정을 거치게 된다.²⁶⁾

검찰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범죄조직들이 마약류를 조직운영의 자금원으로 생각하고,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류의 밀수·밀매에 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²⁷⁾ 일본이나 멕시코처럼 범죄조직이 마약류 밀매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범죄양상이 흉폭하고 잔혹하게 바뀌게 되면서 단속에 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그림 2> 마약류 범죄의 순환구조



* 자료: 관세청, 마약류 단속교육 교재

26) 김병두, 2006. 마약단속의 이해(관세공무원 교육교재), 관세청.

27) 대검찰청 마약과, 2013. 「2012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 언론보도자료(2013.1.28).

3.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존재

마약류 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존재하는 범죄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의 성격을 가진다. 또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를 제공하려는 자와 소비하려는 자가 동시에 존재하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밀거래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에 따라 매매·수수하는 형태의 행위로 성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재화나 서비스 거래와 마찬가지로 마약류도 일반적으로 ‘생산 ⇒ 운송 ⇒ 소비 ⇒ 재투자’라는 4단계의 순환구조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며, 국제적인 마약류 통제와 각국의 마약관련 국내법이 강화될수록 마약류 밀매에 의한 불법 수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기존의 순환구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²⁸⁾

공급 측면에서 마약류 범죄 발생원인은 마약류 밀조와 밀거래를 통해 엄청난 불법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살인이나 폭행 등 다른 범죄와는 달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마약류를 공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약류 밀수 및 밀거래를 통하여 매수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야기하고, 나아가 2차 범죄의 우려와 치료·재활 등에 따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해악이 큰 범죄라고 하겠다.

수요적 측면에서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사용량과 사용횟수를 늘리려는 의존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차 마약류를 투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만큼 재범률도 높다.

수요적 측면의 마약류 범죄도 공급 측면의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마약류를 투여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며,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타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28) 조성권, 앞의 책, pp.280-282.

4. 단속과 치료에 막대한 비용 발생

마약류 범죄 단속과 예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치료·재활 등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기준 마약류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GDP 0.26%에 해당하는 연간 2조 4,899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²⁹⁾

박성수 등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사법 기관 중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에 소요되는 형사사법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09년 기준 마약류 범죄 관련 형사사법 비용은 71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 1인에게 소요된 형사사법 비용은 42,539천원으로 각각 추산되었다.³⁰⁾

권오성은 우리나라의 마약류 치료·재활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추계하면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 치료보호기관 설치 및 운영비, 치료보호기관 입원자에 대한 판별 검사비, 자립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으로 2006~2010년 기간 중 총 1,294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표 1> 마약류 사범의 형사사법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1인당 비용	전체비용
경찰비용		3,166	23,090,609
검찰비용		556	6,606,160
법원비용		61	369,715
교정비용	교 도 소	18,646	39,958,998
	치료감호	19,586	646,350
	보호관찰	524	826,663
합 계		42,539	71,498,495

* 자료: 박성수 등, 2010.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형사사법비용에 관한 연구, 矯正研究 49호

29)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 보건복지가족부, pp.3-4. 동 보고서는 마약류 남용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복지적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형사사법 비용, 주변의 교통 비용 등을 합산한 사회적 비용을 1인당 1억6백만 원, 전체비용 1,642억 원, 암수율(신고나 검거 되지 않은 범죄의 비율 90%)을 고려하여 산출한 전체비용을 2조 4,899억 원으로 각각 추산하였다.

30) 박성수, 박영주, 2010.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형사사법비용에 관한 연구」, 矯正研究 제49호, p.194.

한편, 2005년 우리나라의 마약류 통제 관련기관인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약청 등의 마약류 통제관련 예산 총액 약 54억 원 가운데 '마약 사범 수사 및 단속'에 약 90%(49억 원),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에 약 7%(3억6천만 원), '마약사범 치료재활'에 약 1.5%(8천만 원)가 각각 소요되었으며, 이로 볼 때 우리나라의 마약류 통제정책은 공급차단 정책이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³¹⁾

외국의 사례로 미국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최근까지 약 6천4백억 달러를 지출하였고, 영국은 마약류 관련 범죄 단속에 약 40억 파운드가 소요되었는데, 헤로인과 코카인 관련범죄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만 139억 파운드로 추산되었다.³²⁾

호주의 경우 1973~1982년 기간 동안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 정책을 도입하고, 당시 널리 남용되던 대마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대마 등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하여, 대마사범수가 1973년 4,833명에서 1982년 26,506명으로 여섯 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 검찰, 세관, 법원 등 마약 단속 관련기관의 예산도 1988년 3억1,960만 호주달러(약 1,867억 원)에서 1998년 7억2천만 호주달러(약 5,317억 원)에 달했다.³³⁾

이처럼 마약류 범죄는 불법 마약류의 공급 차단, 수요 억제, 재활과 치료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마약류 남용에 따른 노동력 상실과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 유발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정신과 신체를 파괴하고, 가정파탄과 사회적 윤리관의 왜곡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특징을 가진다.

31) 권오성, 서성아, 김윤수, 2005.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p.2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2) Count The Costs(www.countthecosts.org), 앞의 자료, p.10.

33) John Jiggins, 2005. The Cost of Drug Prohibition in Australia, School of Humanities and Human Service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pp.3-9. 1988년말 기준 우리나라 원화 대비 호주 달러의 매매기준환율은 584.08원/1AU\$, 1998년말 기준 738.51원/1AU\$ 이었다.

제3절 마약류 남용이론 및 비범죄화 논의

1. 범죄 및 마약류 남용 이론

1.1 범죄이론

범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밝혀서 그에 대응키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학은 18세기 중반 계몽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고전주의를 시작으로, 19세기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을 거쳐 20세기의 사회학적 범죄이론 및 현대적 고전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기존의 범죄학 이론들을 포괄하는 통합이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고전주의 범죄이론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은 범죄로 인한 손익을 비교하여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범죄를 실행하게 되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되면 그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한다.³⁴⁾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범죄학자인 롬브로소(Cesare Lombroso, 1835~1909)에 의해 주창된 형질이론은 범죄자들의 일반인들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신체적·정신적 특질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이론이다. 20세기 초기에 자취를 감추었다가 1970년대 초 윌슨에 의해 다시 제기된 이 이론은 생물학적 요소, 환경 및 학습을 상호 의존적 요소로 보고 생물학·심리학적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은 사회과정이론과 사회구조이론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개인이 처해 있는 주위의 환경에 주목하여 개인 상호간의 대면접촉과정, 가정·친구관계·소속한 집단의 특성 등 개인이 처한 환경이 범죄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이론으로서 사회학습이론, 통제이론, 낙인이론 등이 있다.³⁵⁾

34) 박광섭, 박행렬, 2007. 범죄 이론과 정책, pp.4-5,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35) 학습이론에는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이론, Akers의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Matza의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 등이 있고, 통제이론에는 Reckless의 견제이론(containment theory),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등이 있다 (김창윤, 2011. 한국의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 경찰학 논총 제6권 제1호, p.316, 경찰학연구소).

한편,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이론 중 사회해체론은 실업, 빈곤, 불화, 가족 간의 갈등, 질병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 구성원의 기능적인 관계가 붕괴되어 사회해체가 조장되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코헨은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하류계층 문화 간의 차이에서 조장되는 긴장이나 갈등이 범죄를 촉발한다는 비행하위 문화 이론을 제기하였다.³⁶⁾ 또 머튼(R. Merton)은 사회질서 내의 문화적 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는 제도화된 수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을 범죄 현상에 적용한 범죄학적 아노미 이론을 제시하였다.³⁷⁾

1.2 마약류 남용 이론

마약류 남용의 원인에 대한 고찰은 특정 국가에 있어 약물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당해 국가의 약물남용 실태분석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약물사용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측면의 세 가지가 있다.³⁸⁾

첫째, 생물학적 이론에는 유전이론과 생화학적 이론이 있는데, 유전이론은 개인마다 각기 다른 유전적 요소가 환경 및 성격 요인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유의미하게 높은 약물 남용성향을 유인한다는 이론이다. 생화학적 이론은 신체가 약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약물을 요구하는 신체 내 신진대사 주기가 생겨 약물남용을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약물중독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둘째, 심리학적 이론에는 약물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정신분석이론과 약물 남용자의 성격이 비사용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인성이론이 있다.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쾌락을 찾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약물 남용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약물 남용이라는

36) 박광섭, 박행렬, 앞의 책, p.82.

37) 박성훈 등, 2009,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 추세, 1966-2007」, 사회연구 통권18호(2009년 2호), p.54.

38) Korean Help Association(koreanhelpassn.org), 2013.2.19일 검색자료.

형태로 표출한다는 것이다. 인성이론은 특정개인이 심리적 병리와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도취적 행복감을 느끼려는 '현실로부터의 도피'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⁹⁾

셋째, 사회학적 관점의 약물남용 이론은 개인의 특성 보다는 개인이 놓여있는 상황이나 사회관계 또는 사회구조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서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및 하위문화이론 등이 있다. 사회학습 이론은 마약류 남용자가 집단 상호작용 속에서 약물을 남용하게 되는 것은 격려와 보상의 정도가 처벌이나 대가를 크게 앞선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통제이론은 인간이 본래부터 이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통제 및 사회적 유대와의 결속력이 약할 때 약물남용과 같은 이탈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하위문화이론은 베커(H. S. Becker)에 의해 약물남용이론으로 발전되었는데, 약물사용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특정사회집단과의 관련이 약물사용을 배우는 핵심요인이라는 주장이다.⁴⁰⁾

한편, 마약류 등 약물남용의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약물의 입수 가능성과 법적 통제수준, 경제적 요인, 사회악, 남용에 대한 사회의 태도, 사회적 조장 등이 있고 술, 담배, 대마초 등 비교적 처벌이 약한 물질은 코카인, 헤로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hard drugs)로 옮겨가는 'Gate drug'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도 한다.⁴¹⁾

2. 마약류 비범죄화 논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법치주의의 원칙하에 사회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전제적, 독재적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인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되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통제수단으로서 형벌을 대거 도입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국제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급격히

39) 원사덕, 2003. 효율적인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연구, p.12, 석사학위논문, 한성대.

40) 안영철, 200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pp.18-19, 석사학위논문, 호서대.

41) 김수진, 2007. 약물 남용과정 유형별 성격기질 특성 비교, p.19,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기존에 적용되던 법이념과 법률체계로 규율하기가 부적절하거나 불합리한 면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형벌을 통한 국가의 개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형벌의 범죄 억제효과를 저하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 평등, 행복 추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⁴²⁾

이에 1960년대 들어 형벌의 정당한 적용범위를 둘러싼 소위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⁴³⁾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안락사·낙태 등 사람의 죽음에 관한 범죄, 성매매·간통 등 성 풍속에 관한 범죄, 교통범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범죄 등과 더불어 마약류 범죄도 비범죄화 논의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의 비범죄화 논쟁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강요 없는 성매매에 대한 형벌은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성매매특별법'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례가 있다.⁴⁴⁾

마약류 사용의 비범죄화와 관련해서도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은 교통사고로 다친 후 모르핀 치료를 받았고 1990년과 1995년에는 마약류 투약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는데, '타인에게

42) 고필형, 2011. 비범죄화 경향 비교연구: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집(제26집), p.334, 법무연구원.

43)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에 따르면, 비범죄화란 기존의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형벌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포르투갈은 2001년 7월 1일자로 코카인과 헤로인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의 구매, 소지 및 사용 행위를 비범죄화하여 형법상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의 사용과 소지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위반시 행정규칙 위반 행위로 처벌된다.(자료: CATO Institute, 2009. Drug Decriminalization in Portugal, Washington, D.C.).

44) 법률신문(www.lawtimes.co.kr), 2013.1.9. '성매매 여성처벌법' 위헌제청.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강제적인 성매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 심판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사건번호: 2013헌가2).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성매매 특별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며 마약류 사용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모리스와 호킨스는 음주, 마약류, 도박, 성행위 및 청소년 비행 등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형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신하여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형법이 마약류·도박·매춘 등의 제공 행위를 '범죄 가격화(crime tariff)' 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합법적일 경우 거래에 가담했을 사람들을 배제시키게 되어 거래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형법상 과도한 규제에 의한 가격상승은 마약류 범죄와 같이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범죄를 유발하고, 대규모 범죄조직이 등장하여 사업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함으로써 연관 범죄의 자금원이 되어 범죄 활동을 조장하게 된다고 한다.⁴⁵⁾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의 개인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이 있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대마류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 대마에 관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술, 담배와는 달리 대마의 수수와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⁴⁶⁾

미국의 경우 매 4분당 한명이 마약치료소에 안치되고, 주말 운전자 약물검사에서 8명중 1명이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고, 마약류 사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1,93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마약류

45) Norval Morris & Gordon J. Hawkins, 1970. The Honest Politician's Guide to Crime Control, The University of Chicago, U.S.A.(www.press.uchicago.edu/ucp/books/book/chicago/H/bo_5967297.html), p.5.

46) 헌법재판소, 20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사건번호: 2005헌바46 전원재판부).

남용에 따른 2차 강력범죄 발생, 범죄조직의 개입 등 마약류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남용이 일상화된 나라와 동등한 잣대로 우리나라의 마약류 비범죄화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아 보인다.⁴⁷⁾

즉 마약류 비범죄화는 당해 사회나 국가가 처한 마약류 남용실태와 국민의 도덕관념 및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범죄화 대상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유형 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약류의 불법적 오남용은 노동력 상실, 개인과 가정파괴, 범죄유발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마약류 남용에 대한 사회적 금기의식과 마약류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큰 해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마약류 비범죄화 논의는 설 자리가 그리 넓어 보이지 않는다.



47) ONDCP, 2012. ONDCP 홈페이지(<http://www.whitehouse.gov/ondcp>), 2012.2.2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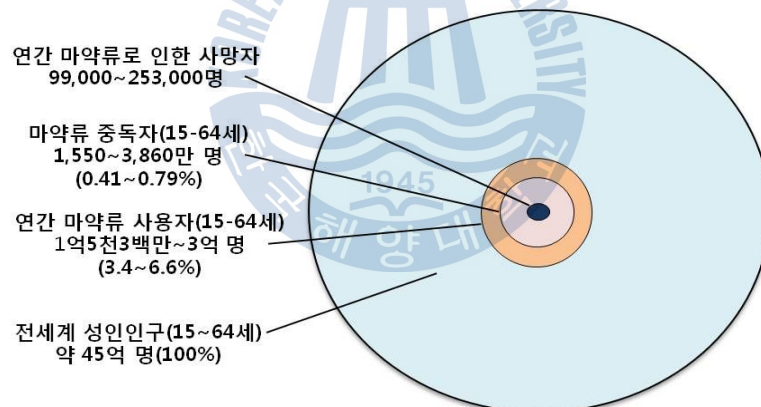
제 3 장 세계 마약류 동향과 국제 마약류 단속체계

제1절 세계 마약류 동향

1. 세계 마약류 불법생산 및 밀거래 동향

유엔 마약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세계 15-64세 성인 인구의 3.4~6.6%에 해당하는 1억5천3백만~3억 명이 연간 최소 한번 이상 마약류를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1,550~3,860만 명은 심각한 수준의 남용자였다. 또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99,000~253,000명으로 이는 성인 전체 사망자의 0.5~1.3%에 해당한다.⁴⁸⁾

<그림 3> 전 세계 불법 마약류 남용현황(2010년)



* 자료: UNODC, 「World Drug Report 2012」 자료 재구성

대마류는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가장 널리 소비되고 있는 마약류로 연간 남용률이 2.6~5%로 2010년 중 1억1천9백만~2억2천4백만 명이

48) UNODC, World Drug Report 2012. & UNCND(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11-15 March 2013), 2013.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Vienna, Austria.

한 번 이상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 연간생산량은 대마초 13,300~66,100톤, 대마수지 2,200~9,900톤에 달했다고 한다. 2006~2010년 기간 중 대마초 적발량은 5,525~6,253톤으로, 이 가운데 북미 지역의 미국과 멕시코가 전체 적발량의 48~71%를 차지했는데, 멕시코에서는 2010년 2,31톤, 2011년 2,033톤이 적발되었고 2011년도 미국의 적발량은 최초로 멕시코에서의 적발량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1년도 주요국별 적발현황을 보면, 남미지역의 콜롬비아 321톤, 브라질 174톤, 인도 123톤(이 가운데 13%가 네팔로부터 밀반입), 태국 13톤, 나이지리아 139톤(2011년7월~2012년4월), 이집트 73톤, 모잠비크 32톤, 부르키나파소 33톤 등이었다.

대마수지의 경우, 1톤 이상의 적발량을 기록한 나라가 27개였는데, 이 가운데 13개국 이 유럽 지역이었으며, 나머지는 중동,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이었다. 대마수지의 주요생산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모로코로 스페인과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유럽지역 등으로 반입되고 있다.

<표 2> 전 세계 마약류 적발추이(2010~2011년)

마약류 종류		2010년 적발량(kg)	2011년 추세
대마류	대마초	6,252,876	증감률 10% 미만
	대마수지	1,136,278	“
아편계 마약류	아편	492,439	“
	모르핀	19,304	“
	헤로인	81,168	10% 이상 감소
코카인		632,653	증감률 10% 미만
ATS계 마약류	암페타민	19,352	10% 이상 증가
	메트암페타민	44,891	“
	MDMA계	3,787	10% 이상 감소

* 자료: UNODC, World Drug Report 2012

유럽지역에서 적발되는 대마수지의 대부분은 모로코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주요 중계지인 스페인에서 2011년 356톤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적발량의 85%에 해당한다. 한편, 2011년에 모로코 125톤, 파키스탄 187톤, 이란 57톤, 프랑스 55톤, 아프가니스탄 55톤, 알제리 53톤의 대마수지를 각각 적발했다.

아편계 마약류의 남용률은 0.6~0.8%로 26.4~36백만 명이 연간 한번 이상 사용했으며, 그 가운데 13~21백만 명은 헤로인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편은 세계 양대 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와 황금의 초승달 지역⁴⁹⁾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 2011년도 경작면적은 총 207,000 헥타르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이 63%, 라오스와 미얀마가 20%,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이 7%,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타의 지역이 각각 차지하였다. 그 외 지역에서도 약 13,000헥타르에 아편이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아편 총 생산량은 7천 톤으로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2007년에 비해 20%가 감소했으나, 병충해로 인해 세계 최대 아편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확이 절반가량 줄었던 2010년의 4,700톤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11년 주요 생산지별 생산량은 아프가니스탄 5,800톤, 미얀마 610톤, 라오스 25톤으로 2011년의 3,600톤, 580톤, 18톤에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된 7,000톤의 아편 중 3,400톤은 가공되지 않은 채 원상태로 소비되거나 밀거래되었고, 그 나머지는 약 467톤의 헤로인으로 가공되어 밀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편 적발량은 2009년 653톤, 2010년 492톤, 2011년 488톤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란은 2011년 374톤, 아프가니스탄은 80톤을 각각 적발하였다.

2010년 전 세계 헤로인 적발량은 81톤으로 2009년의 76톤 보다 감소했는데,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는 적발량이 증가했고 러시아, 서유럽 및 동유럽

49)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 area)는 동남아시아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3국이 메콩 강에서 접하는 산악지대로 미얀마 동부 산(Shan) 주에 속하며,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국경 부근의 황금의 초승달 지대(Golden Crescent area)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아편 경작지이자 헤로인 밀조지로 알려져 있다.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 헤로인 적발량은 이란이 전체 적발량의 33%인 27톤, 터키 13톤, 중국 5.4톤, 파키스탄 4.2톤, 미국 3.5톤, 콜롬비아 1.7톤, 에콰도르 853kg, 영국 798kg, 멕시코 374kg, 캐나다 98kg 등이었고, 파키스탄에서는 모르핀 6.1톤이 적발되었다. 한편, 점점 더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집트 234kg, 케냐 35kg, 나이지리아 202kg, 탄자니아 191kg이 각각 적발되었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호주가 513kg을 적발하였다.

코카인 남용인구는 전 세계 성인인구의 0.3~0.4%에 해당하는 13.2~19.5백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북미와 남미 몇몇 나라에서 상당 수준 감소한 반면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 몇몇 나라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카는 주로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 남미의 3개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어 코카인 등으로 가공되어 남미, 북미, 유럽 등 세계 주요 소비지로 공급되고 있는데, 2010년 기준 남미 3개국에서의 코카 불법경작 면적은 149,200 헥타르, 코카인 추정 생산량은 788~1,060톤에 달한다고 한다. 2001~2005년 사이에 코카인 생산량 대비 적발량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콜롬비아 등 주요 생산국에서 단속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2005년 이후에는 정부의 단속강화에 대응하여 마약조직들이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적발을 회피함에 따라 적발량이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09년의 732톤 보다 감소한 694톤이 적발되었는데, 이 가운데 약 66%가 중남미 지역, 북미와 그 외 지역에서 각각 33%가 적발되었다.

지역별로는 북미, 남미, 서유럽 및 중앙유럽 지역이 세계최대의 코카인 시장이었고, 미국의 경우 전체 성인인구 대비 코카인 남용률은 2006년 3.0%에서 2010년 2.2%로 감소했는데, 이는 콜롬비아에서의 생산량이 47%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8~2010년 중 미국에서의 코카인 가격은 공급량 감소에 따라 2007년 수준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주요 국가별 적발현황은 콜롬비아 146톤, 볼리비아 34톤, 에콰도르 21.3톤, 브라질 24.5톤, 온두라스 16.8톤, 스페인 16.6톤, 페루 10.8톤, 프랑스

10.8톤, 코스타리카 9톤, 이태리 6.3톤, 아르헨티나 4.4톤 등이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콜롬비아 등 코카인 주요 생산지와 최종 소비지인 북미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온두라스, 에콰도르 등에서 많은 적발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나라들이 코카인 밀수의 중계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 및 중부 유럽에서의 코카인 적발량은 2006년 121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2011년 기간 중에 53~62톤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2011년에 스페인 17톤, 프랑스 10.8톤, 벨기에 8톤, 이태리 6.3톤, 네덜란드 10톤, 영국 2.5톤을 각각 적발했다. 유럽으로의 코카인 공급루트는 남미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루트와 함께 서유럽을 경유하는 루트도 이용되고 있는데, 중계지 가운데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 2010년 707kg, 2011년 411kg이 각각 적발되었다.

암페타민계 마약류(Amphetamine-Type Stimulants)로 대표되는 합성마약류는 대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남용이 심각한 마약류로서 생산과 공급에 조직범죄 그룹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DMA를 제외한 암페타민계 마약류의 경우 전 세계 성인인구의 0.3~1.2%에 해당하는 14.3~52.5백만 명이 남용했으며, 서남아시아 중아시아 및 트랜스코카시아 지역에서 적발량이 증가했고 몇몇 지역에서 불법생산이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이다.

2011년 전 세계 암페타민 적발량은 24톤으로 2010년의 19톤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2009년의 33톤 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유럽과 중동,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적발량이 증가했다. 국가별 2011년 중 적발량은 사우디아라비아 11.5톤(2010년 8.8톤), 시리아 3.9톤(2010년 2.1톤)이 각각 적발되었는데,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소비되는 알약 형태의 암페타민의 주요 공급지는 유럽 지역이었고, 요르단, 시리아, 터키 등이 밀수의 중계지로 이용되고 있다. 서유럽과 중부유럽에서의 암페타민 적발량은 2008년 7.9톤, 2009년 7.4톤, 2010년 4.7톤, 2011년 4.7톤으로 각각 나타났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은 2001~2007년 사이에 적발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2011년 적발량 잠정치는 58.8톤을 기록하여 2008년도 적발량의 약 3배에 달했다.

많은 양의 메트암페타민이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고 적발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이전에 1톤이 넘지 않던 멕시코에서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이 2010년 13톤, 2011년 30톤을 기록했다.⁵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이 2009년 16톤, 2010년 20톤, 2011년 25톤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중국과 태국이 전체 적발량의 94%를 차지했다. 중국은 2005~2009년 기간중 연간 6~7톤이 적발되었고 2011년에는 14.3톤을 적발했는데, 2010년 378건, 2012년 357건의 국내 밀조시설을 각각 적발하였다. 태국은 2010년 5.6톤, 2011년 9.6톤을 각각 적발했는데 대부분이 알약형태의 메트암페타민이었으며, 미얀마에서 생산되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밀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서유럽과 중부유럽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적발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1.2톤이 적발되었는데, 폴란드 518kg, 노르웨이 156kg, 리투아니아 134kg, 스웨덴 95kg, 라트비아 52kg, 프랑스 49kg, 독일 40kg, 핀란드 28kg, 체코 20kg을 각각 적발하였다.

MDMA계 마약류의 남용률은 0.2~0.6%로 10.5~28백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남용률이 여전히 2.9%로 높은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감소한 반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상승했다. 전 세계 적발량은 2007년 17톤, 2010년 3.8톤, 2011년 2.1톤으로 감소했는데, 2011년도 주요 국가의 적발현황을 보면 미국 521kg, 프랑스 409kg, 인도네시아 329kg, 캐나다 192kg, 호주 120kg, 영국 104kg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까지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전통적 마약류에 비하여 단속이 느슨했던 합성 마약류 밀거래의 급속한 확산과 그에 따른 높은 불법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⁵¹⁾

50) 멕시코 당국은 자국내 메트암페타민 주요 밀조 거점으로 북부의 Sinaloa, Sonora 및 Baja California와 중부의 Michoacan, Jalisco 및 Guanajuato를 지목하였다.(자료: UNCND,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2013).

51) UNODC, 2011. Amphetamines and Ecstasy, 2011 Global ATS Assessment, p.3, Global SMART Programme.

2. 아태지역 마약류 동향

1990년대 이래 메트암페타민, MDMA(엑스터시) 등 암페타민계 합성마약류(ATS; Amphetamine Type Stimulants)가 아태지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기 시작하였다. ATS는 대마초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마약류이며, 아시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ATS 소비시장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내 15-64세 연령 인구의 0.2~1.3%가 AT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암페타민 사용자 수는 370~1,950만 명으로 추정된다.⁵²⁾

1990년 후반 이래 최근까지 ATS의 불법 제조, 밀매 및 사용이 이 지역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2011년 중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에서 남용이 증가하였고,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에서는 정체이거나 감소추세를 보였다.

ATS는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제조되는데, 밀조시설이 2009년 416개, 2010년 442개, 2011년 401개가 각각 적발되었으며 대부분이 메트암페타민 제조시설이었다.

2011년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적발된 주요 마약류는 헤로인 9,067kg, 아편 1,842kg, 대마 49,698kg, 메트암페타민 8,821kg, 알약형태의 메트암페타민 122백만 정, MDMA 157만정, 케타민 5,996kg 등이었다.⁵³⁾

주요 국가별 2011년도 마약류 적발내역을 보면, 중국은 헤로인 7,080kg, 아편 1,015kg, 대마 3,580kg, 메트암페타민 4,458kg, 알약형태 메트암페타민 6,194만정, MDMA 32만 정을 각각 적발하였다. 일본은 헤로인 3.6kg, 아편 7.6kg, 대마

52) UNODC Global SMART Programme, 2012. Patterns and Trends of Amphetamine-Type Stimulants and Other Drugs: Asia and the Pacific 2012, Bangkok, Thailand.(유영환, 2013. 「UNODC 2012 아태지역 마약동향 보고서(2013.1.25),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보고자료 재인용).

53) UNODC가 ASEAN 및 중국과 함께 개발하여 사용 중인 인터넷 기반의 마약류 적발자료 수집 및 공유 시스템인 DAINAP(Drug Abuse Information Network for Asia and the Pacific) 등으로부터 집계한 통계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에서의 적발실적을 합한 수치이다.

169.5kg, 메트암페타민 350.9kg, MDMA 27,187정을 적발하였다. 태국은 헤로인 547.5kg, 아편 42.7kg, 대마 14,375kg, 알약형태 메트암페타민 4,937만정, 메트암페타민 1,232kg, MDMA 21,115정을 적발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메트암페타민 1,161kg, MDMA 1,096,249정, 대마 20,260kg을 각각 적발하였다.

한편, 최근 메카치논의 유사물질인 4-methylmethcathinone, 합성 Cannabinoids, 벤질피페라진과 유사한 mCPP(m-chloro-phenylpiperazin) 등 새로운 형태의 향정신성 마약류가 적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에서도 적발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코카인은 최근 몇 년간 많은 양의 코카인이 몇몇 나라에서 적발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홍콩, 중국 등은 코카인 밀수의 중계지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주로 코카인과 헤로인 밀수에 관여하던 서아프리카 마약류 밀수조직이 점차 메트암페타민 밀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란인 국제범죄조직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및 태국을 포함한 이 지역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수에 계속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국가 마약류 동향

3.1 중 국

2011년도 중국은 마약류 사범 101,718건을 적발하고 112,406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 13.9%, 검거자수 10.4%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헤로인 7.08톤, 아편 0.82톤, 메트암페타민 14.32톤, 케타민 5.38톤, 대마류 2.6톤이 각각 적발되었다.

중국으로의 아편 주요 공급지인 황금의 삼각지대에서의 양귀비 경작지가 2005년도에 30,500 헥타르에서 2006년 8,900 헥타르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에는 31,700 헥타르로 근래 가장 넓은 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의 삼각지대에서의 암페타민계 마약류의 밀조가 활발하여 동 지역으로부터 밀수된 메트암페타민 적발실적이 2009년 3.2톤, 2010년 4.7톤, 2011년 7.7톤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동 지역과 인접한 중국의 운남성에서는 2011년도 암페타민계 마약류의 적발량이 헤로인 적발량을 초과했다고 한다.

황금의 초승달 지역으로부터의 헤로인 밀수도 계속되어 2011년에 신장지역에서 611kg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0배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헤로인 불법 남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메트암페타민 남용은 날로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엑스터시(MDMA) 적발실적은 2011년 463건 73kg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 8.6%, 중량 60%가 각각 감소하였다. 해외로부터는 주로 운남성, 광둥성, 광서성 지역을 통하여 메트암페타민이 유입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밀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내 마약류 밀조활동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도에는 전년에 비하여 20% 증가한 총 529건의 합성마약류 밀조사건이 감숙성과 티베트 지역을 제외한 광둥성, 사천성, 하북성 등 중국 29개 성(省)에서 적발되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92건이 광둥지역에서 적발되었다.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에 총 414건의 원료물질 관련사건이 적발되었다.

한편, 2011년 중국 당국에 등록된 마약류 남용자 수는 약 18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암페타민계 마약류 남용자 수가 417,210명으로 전체의 23.3%를 점했는데, 이는 2007년 9.3%, 2008년 13.9%, 2010년 18.8%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이다.

메트암페타민 남용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새로 등록된 남용자의 67.8%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이었다. 반면, 헤로인 남용자의 비율은 2008년 77.5%, 2009년 73.2%, 2010년 69.0%, 2011년 64.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⁵⁴⁾

54) 중국국가금독위원회(中國國家禁毒委員會), 2012. 「Country Report for SMART Programme」, UNODC 주관 Global SMART Programme(Synthetics Monitoring: Analyses, Reporting and

3.2 미 국

미국 내 마약류 남용현황을 2009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의 통계로 살펴보면, 연중 한 번 이상 마약류를 투여한 사람이 메트암페타민은 1,165,000명, 코카인은 4,707,000명, 크랙 1,016,000명, 헤로인 및 아편 605,000명, 대마 28,521,000명, MDMA 2,799,000명 등으로 나타났다.⁵⁵⁾

이는 2011년 미국 전체 인구 312백만 명⁵⁶⁾ 대비 연중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여한 사람의 비율이 마약류별로 메트암페타민 0.37%, 코카인 1.51%, 크랙 0.33%, 헤로인 및 아편 0.19%, 대마 9.15%, MDMA 0.90%에 각각 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는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메트암페타민, 환각제, 비의료용 처방약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대마 사용자이다. 2010년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 16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대마 소지자로 수감자 수는 1980년 4만 명에서 2010년 5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표 3> 미국 마약단속청의 연도별 주요 마약류 압수량

연도	코카인 (kg)	헤로인 (kg)	대마 (kg)	메트암페타민 (kg)	환각제 (투약분)
2011	33,271	1,067	573,189	2,467	3,944,621
2010	30,058	721	723,716	2,187	2,602,906
2009	50,819	619	671,557	2,012	3,425,851
2008	50,473	605	662,145	1,519	9,335,902
2007	98,292	625	360,728	1,112	5,697,772

* 자료: 미국 마약단속청 홈페이지(www.justice.gov/dea)

Trends Programme) Regional Seminar (2012.7.24-25) 발표자료. SMART Programme은 동아시아 지역의 암페타민계 마약류(Amphetamine-Type Stimulants) 생산·밀수·남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2008.9월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주관으로 발족한 프로그램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이 발족기금을 지원하였다.

55) Amera-Chem, Inc., 2011. Drug Identification Bible 2011 Edition, Colorado, USA.

56) 월드뱅크(<http://data.worldbank.org/country/united-states>), 2013.6.5일 검색.

미국 마약단속청의 마약류 범죄 관련 통계를 보면, 검거자 수는 1997년 이전까지 2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그 후 2003년과 2007년 및 200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3만 명을 넘고 있으며, 2010년 31,301명, 2012년 32,268명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2011년 미국 내 마약류 압수량은 코카인 33.3톤, 헤로인 1.1톤, 대마 573톤, 메트암페타민 2.5톤, 환각제 394만회 투약분량 등이었고, 최근에 코카인 압수량은 감소한 반면 메트암페타민과 헤로인 압수량은 증가하였다.⁵⁷⁾

코카인과 헤로인의 경우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으나 메트암페타민의 미국 내 밀조활동도 활발하여 2009년 12,851건, 2010년 15,196건, 2011년 13,390건, 2012년 11,210건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밀조시설이 적발되고 있다.⁵⁸⁾

2012년 미국 연방정부의 마약통제 예산은 약 260억 달러로 예방, 치료, 국내의 단속 및 공급차단 등에 소요되었으며, 예방과 치료 예산은 2008년 이후 증가했으나 전체 예산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⁵⁹⁾

미국 국가마약정보센터(National Drug Intelligence Center)에 따르면 미국 내 마약류 남용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2007년도에 1,930억 달러에 달했으며, 항목별로는 범죄비용 610억 달러, 의료비용 110억 달러, 생산성 상실 비용 1,200억 달러였다고 한다.

한편, 최근의 ONDCP 보고서 등은 막대한 불법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마약류 밀거래 시장에서 대마류의 연간 소매거래 총액이 150~300억 달러, 2006년도 코카인과 헤로인 및 메트암페타민 소매거래 총액이 약 700억 달러에 각각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1990년대 초, 미국 정부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북미지역의 코카인 공급원인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에스코바와

57) DEA Homepage(www.justice.gov/dea/resource-center/statistics.shtml), 2012.2.7일 검색.

58) El Paso Intelligence Center(EPIC), National Seizure System, 2013.1.27일 검색자료.

59) Beau Kilmer, Jonathan P. Caulkins, Rosalie Liccardo Pacula & Peter H. Reuter, 2012. The U.S. Drug Policy Landscape: Insights and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 View, RAND Drug Policy Research Center, p.10.

동료 마약 왕들이 구속되면서, 당시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나 뉴멕시코 주(州) 등 접경지역의 공급원 역할을 하던 멕시코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멕시코 마약업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밀매조직으로 성장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역에서는 아직도 마약과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의 최대 마약 공급처가 된 멕시코 내에서는 2006년 칼데론 대통령이 취임하여 정부가 주요 마약카르텔 소탕에 주력하면서 최초 5년간 주요 7개 마약 밀수조직(DTO: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s)의 총책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지만, 이로 인해 마약조직 간의 이합집산과 저항이 더욱 강력해졌으며 마약관련 폭력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마약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럽시장에 코카인을 공급하기 위해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과 연계하고 서아프리카 지역을 진출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등 점차 해외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⁶⁰⁾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조직범죄 관련 살인사건은 약 5만 건으로 이 가운데 약 80%가 마약범죄 관련 살인사건이었다고 한다.⁶¹⁾ 이들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조직범죄 구성원이 60%, 정부공무원 27%, 그 밖의 민간인 13%였는데, 여성 4천명, 아동 1천명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며, 약 5만 명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을 마약관련 범죄로 잃었다고 한다.⁶²⁾

미국 내 마약문제를 다룬 영화 '트래픽(Traffic)'의 소더버그 감독은 "멕시코를 깨부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멕시코가 아니라 마약에 대한 수요가 문제다. 이런 수요는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한쪽을 막으면 다른 어디에선가 구멍이 뚫리게 마련이니까"라고 마약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뿌리 깊은 연결고리를 언급하며, 미국이 벌이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 회의적 시각을 피력한바 있다.

60) 국제범죄정보센터, 2011. 마약류 용어해설, pp.50-51, 국가정보원.

61) June S. Beittel, 2012. Mexico's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s: Source and Scope of the Rising Violen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p.24-29.

62) Count The Costs, 앞의 책, p.9.

3.3 일 본

일본세관의 2011년도 마약류 적발실적은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총 326건으로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약 509kg, MDMA 등 알약형태의 마약류가 18,000정이 각각 적발되었다.⁶³⁾

일본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은 185건 402kg이 적발되었는데, 이 가운데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수가 141건 232kg, 화물을 이용한 밀수가 22건 128kg이었고, 삼킴(swallowing) 수법이 증가했으며 마약류 공급원이 아프리카와 유럽등지로 다양화되었고 운반책의 국적도 다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전까지는 메트암페타민의 주요 공급지는 동남아시아, 중국, 북미, 멕시코, 중동 등 13개국이었으나, 2011년에 적발된 마약류의 공급지는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38개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본의 연도별 주요 마약류 압수량

(단위: kg)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메트암페타민	287	408	333	322	402
대마초	450	63	40	2	6
대마수지	41	24	12	25	51
헤로인	1	1	1	1	3
코카인	16	2	13	6	38

* 자료: 일본세관, 2012. Trends of Illicit Drug Smuggling in Japan

메트암페타민의 지역별 공급지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중국, 홍콩, 대만, 인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프리카지역의 가나, 카메룬, 감비아, 케냐, 아이보리코스트, 세네갈, 나이지리아, 베냉, 남아공, 짐바브웨, 토고,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말리, 모잠비크 등이었다.

63) Japan Customs, 2012. Trends of Illicit Drug Smuggling in Japan, pp.2-12.

유럽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러시아, 이태리, 루마니아 등이었고, 중동은 터키와 아랍에미리트, 북미지역은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는 멕시코와 볼리비아 등이었다.

한편, 2011년 중 대마는 71건 57kg이 적발되었는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적발량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대마초의 주요 공급지는 미국이었고 대마수지는 인도가 주요 공급지로 나타났다.

3.4 태 국

태국 마약통제본부(ONCB)의 보고서에 따르면⁶⁴⁾, 태국 정부의 지속적인 아편 밀경작 근절 노력과 단속 장비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아편 경작지 규모는 2009년 211헥타르, 2010년 289헥타르, 2011년 217헥타르, 2012년 209헥타르 등으로 최근 4년간 획기적인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태국 내 아편 잠정 생산량은 2009년 3.29톤, 2010년 4.51톤, 2010년 3.39톤, 2012년 3.26톤으로, 밀경작 지역은 미얀마 및 라오스와 국경을 접한 치앙마이, 치앙라이, 매홍손, 파야오 등 북부지역의 산악지역(소위 'Golden Triangle')이다.

최근 태국정부는 단속과 처벌 위주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북부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커피, 허브 등 대체 작물 경작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어 주민들이 스스로 아편 밀경작을 중단케 하는 대체작물경작계획(Alternative Development Plan)을 적극 시행 중이나 성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한다.

<표 5> 최근 5년간 태국 내 양귀비 밀경작 현황

(단위: ha)

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작면적	288.07	211.11	288.65	216.87	208.59

* 자료: 태국 ONCB, Opium Cultivation and Eradication Report for Thailand 2011-2012

64) ONCB(Office of Narcotics Control Board), 2013. Opium Cultivation and Eradication Report for Thailand 2011-2012.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2013. 주태국 ONCB 2011/2012 아편 밀경작 현황 보고서(2013.2.7.)' 인용.

한편, UNODC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내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류는 현지에서 야바(Yaba)⁶⁵⁾라고 불리는 알약 형태의 메트암페타민으로 동 마약류 사용자가 전체 남용자의 70~80%에 이른다고 한다.⁶⁶⁾ 대마초는 야바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남용되는 마약류로 지난 5년간 증가추세를 보였고 아편도 최근 증가추세이다. 크라툼(Kratom)은 최근 젊은 층에서 감기시럽, 소프트음료 및 얼음과 함께 칵테일에 용액을 섞어서 마시는데 태국 남부지역에서 주로 남용되고 있다.

태국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현황을 보면, 2010년의 133,928명에서 2011년 183,547명으로 38%가 증가하였으며, 마약류별로는 야바 중독자가 전체의 86%를 차지했고, 메트암페타민으로 인해 치료받은 사람은 6,728명으로 2010년의 2,353명 대비 3배가 증가했다.

마약류 범죄 관련 검거자 수는 2011년 247,796명으로 2010년 208,344명에 비해 19%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87%가 암페타민계 합성마약사범이었고 특히 야바 관련 검거자 수가 191,956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마약류 종류별 적발현황은 2011년 중 헤로인 548kg, 아편 42.7kg, 대마 14,375kg, 알약형태 메트암페타민 4,937만정, 메트암페타민 1,232kg, MDMA 21,115정, 케타민 78kg이 각각 적발되었다.

태국에서 소비되는 마약류 중 알약형태의 메트암페타민은 미얀마와 라오스로부터 유입되며,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은 이란, 미얀마, 캄보디아 및 서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밀수입되어 일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홍콩, 중국 등으로 밀수되고 있다.

65) 야바(Yaba)는 태국말로 'Crazy Drug'이라는 의미로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알약형태로 이고 표면에 'WY'나 '99' 등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 색깔은 오렌지색이나 녹색을 띤다. 주로 태국과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어 중국 등지로 밀수되고 있다(Eastern Horizons, March 2004, UNODC Regional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한편, 태국의 한 연구소는 야바 360개를 검사한 결과 266개(73.9%)에서 평균적으로 메트암페타민 20.4mg, 카페인 51.0mg이 검출되었고, 중량 43.2~138.2mg, 직경 5.5~7.4mm, 두께 1.8~3.5mm로 각각 나타났다고 한다.(Institute of Health Research of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WCO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Monthly Bulletin(April 2004 Issue no.196.) p.5. 재인용.

66) UNODC Global SMART Programme, 앞의 책, p.107.

<표 6> 태국 내 주요 마약류 종류별 적발현황

종류 \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야바(천정)	12,784	20,024	24,638	48,794	49,366
메트암페타민(kg)	48.3	54.3	213.2	706.0	1,232.0
엑스타시(정)	92,336	49,833	61,089	16,647	21,115
대마초(kg)	17,226	21,105	26,070	22,415	14,302
대마수지(kg)	1.7	29.9	10.2	55.4	72.5
코카인(kg)	18.9	11.5	9.3	31.1	31.8
헤로인(kg)	294.6	199.9	143.1	137.6	547.5
케타민(kg)	2.8	18.5	20.6	166.7	78.0
크라툼(kg)	42,712	15,675	29,917	44,206	32,913
아편 (kg)	72.6	117.9	111.1	157	42.7

* 자료: ONCB, Opium Cultivation and Eradication Report for Thailand 2011-2012

메트암페타민 밀수와 관련하여 2011년 이란인 30여명, 나이지리아인 102명을 포함한 서아프리카인 138명이 검거되었는데, 아프리카 운반책은 대부분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탑승하여 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경유하여 태국으로 밀반입하고 있다.

밀조시설의 경우에서는 2009년 이래 북부지역과 방콕 및 그 인근 주에서 소규모의 알약 압착시설과 결정형 메트암페타민 제조시설이 적발되었고, 2011년에도 소규모 제조시설이 적발되었다. MDMA는 대부분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되고 일부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밀수되고 있다.

한편, 태국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제조된 헤로인의 주요 밀반입 및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고, 상당량의 코카인이 아프리카 마약밀수조직에 의해 남미

지역으로부터 태국, 필리핀 등 국적의 항공 운반책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마약통제본부는 국경밀수의 지속, 2011년 10월 홍수로 인한 실업자의 마약류 범죄개입의 우려, 높은 마약수요, 공무원과 마약범죄 조직과의 밀착, 아프리카·동남아 등 마약조직의 활발한 활약, 치료중인 중독자의 마약 재남용 등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태국 내 마약 상황에 대응하여, 2011년 9월 11일 '마약퇴치 전 국가적 단결(Kingdom's Unity for Victory over Drugs)'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불법 마약류 퇴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⁶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급차단, 수요감축 및 치료재활 등 불법 마약류의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마약류의 주요 최종 소비지는 생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생산지로부터 소비지로의 공급을 위해 국경을 통과하게 마련이고, 필연적으로 세관 등 국경 통제기관들은 마약류 밀수 단속의 최 일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67) Office of Narcotics Control Board, 2012. Thailand Narcotics Control Annual Report 2011. Ministry of Justice, Thailand.

제2절 국제 마약류 통제규범 및 단속기관

1. 마약류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

국제사회가 마약류 규제에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아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19세기부터이다. 아편 남용에 의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은 아편 관련법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1909년에는 최초로 국제아편회의가 미국의 발의로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1912년에 헤이그에서는 아편과 코카인의 생산과 거래를 법률로 규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제아편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1925년에 조인된 제네바 협약은 헤이그 아편협약을 확장하고 대마를 통제대상 마약류에 포함시켰다.⁶⁸⁾

이후 마약류 단속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유엔으로 옮겨가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이 체결되었다.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은 이전까지의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단일화한 협약으로 현재 116개의 마약이 동 협약의 관리대상이며 아편, 모르핀, 헤로인 및 코데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 코카인 및 대마 등을 통제한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하였다.

1971년 「UN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은 향정신성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발족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978년 가입하였다. 동 협약이 규정한 관리대상 물질은 111개로 주로 중추신경(中樞神經)을 자극하는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물질로 각성제, 환각제, 항우울제 및 진통제가 있다.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은 불법마약류의 국제적 이동 및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효율적인

68) 이영제, 2003. 마약류 범죄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 대마 범죄를 중심으로, p.12, 석사논문, 광운대학교.

대처를 위해 1988년 비엔나에서 채택(일명 비엔나협약 또는 88협약이라고도 함)되었다. 동 협약은 마약관련 자금세탁 처벌, 불법수익 몰수, 통제배달, 범죄인 인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아세톤,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 22가지 원료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 완료하고 1998년 152번째로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2.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국제연합의 마약관련 기구로는 유엔마약통제프로그램(UN Drug Control Programme), 국제예방범죄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마약범죄사무소(Office on Drugs and Crime), 마약위원회(Committee on Narcotic Drugs) 등이 있다.⁶⁹⁾

2.1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유엔의 마약관련 최고 집행기구로서 1997년 11월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과 국제예방범죄센터(CICP)를 통합한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소(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를 2002년 10월 UNODC로 개칭하였다. 유엔의 정책결정기구인 마약위원회(Committee on Narcotic Drugs)와 지역별회의인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등의 개최를 주도하며 세계 각국의 마약류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및 기술지원 등 마약통제정책을 집행한다.⁷⁰⁾

2.2 유엔마약통제계획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은 유엔의 마약관련 최고 집행기구로서 1990년 2월

69) 관세청, 앞의 책, p.52.

70) 대검찰청, 2012. 2011 마약류 범죄백서, p.275.

21일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기존의 유엔사무국의 마약과(DND),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사무국, 마약남용통제기금(UNFDAC)을 통합하여 1991년 3월 1일 설립되었다. 유엔의 정책결정기구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와 지역별 회의(HONLEA) 등의 개최를 주도하며 세계 각국의 마약류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및 기술지원 등 마약통제정책을 집행한다.

2.3 국제예방법죄센터

국제예방법죄센터(CICP)는 범죄예방,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형법개혁과 관련된 유엔기구로 주로 국제조직범죄, 부패 및 인신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마약을 담당하는 UNDCP과 마약의 범죄를 담당하는 CICP를 통합하여 1977년 11월 지금의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의 전신인 UNODCCP를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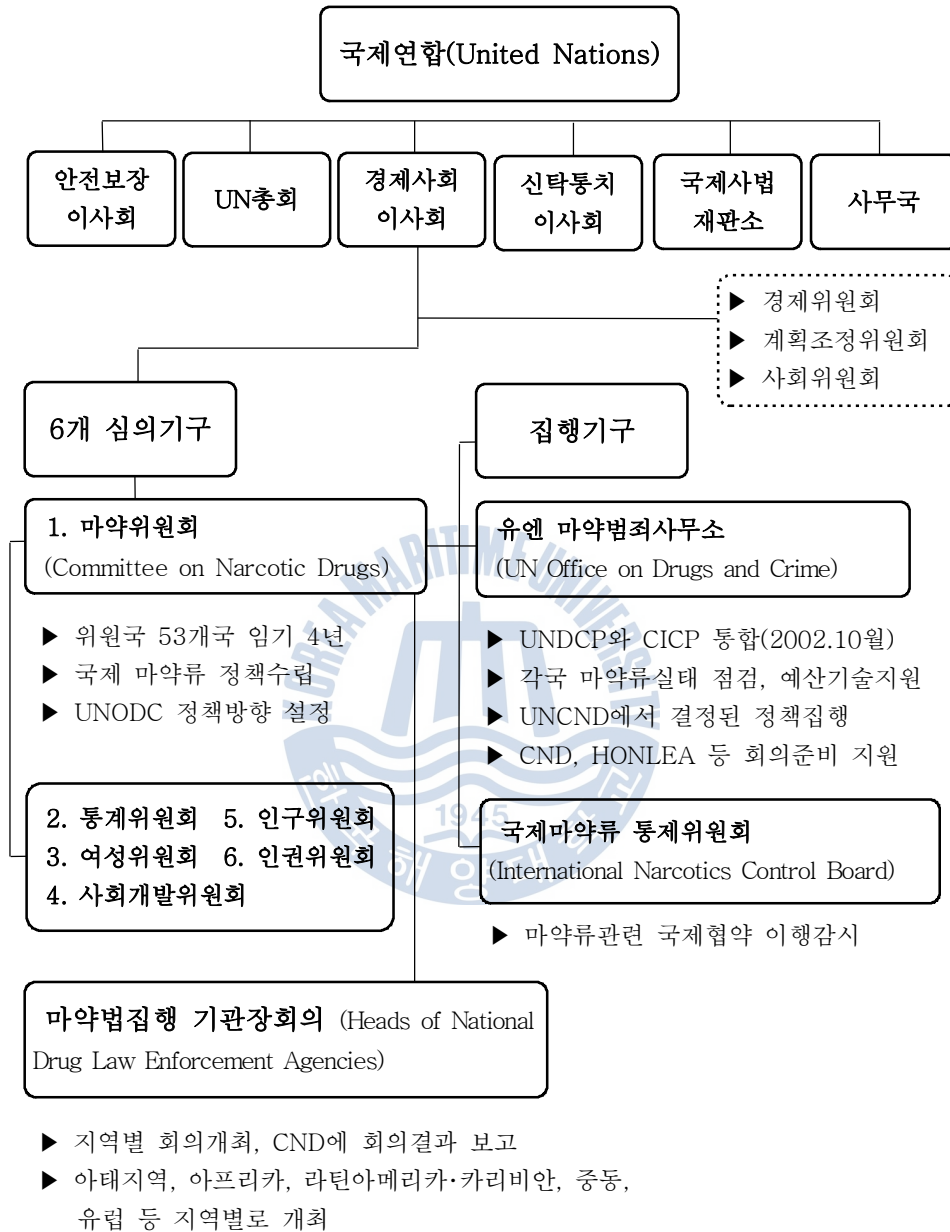
2.4 국제마약통제위원회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거하여 1968년에 설립되었으며, 유엔 마약협약 이행감시를 위한 독립된 준사법기관이다. INCB는 마약류의 합법적인 제조, 거래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용 및 과학용 마약류의 공급량을 파악하고 합법 마약류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며 합법통로에서의 불법적인 유출을 감시하는 한편, 마약류 원료 물질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각국을 지원한다. 특히, 마약류의 불법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며,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파악한다.

2.5 유엔마약위원회

유엔마약위원회(UNCND)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위원국은 53개국(임기 4년)이며 마약통제정책 결정의 핵심이 되는 심의기구이다. 매년 3~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림 4> 유엔의 마약류 관련기구



* 자료: 관세청, 2007. 세관직원이면 꼭 알아야할 마약상식

마약법 집행기관장(HONLEA)회의는 유엔 마약위원회(CND) 산하 지역별 마약류 단속책임자 회의로서 ①아·태지역 ②유럽 ③중근동지역 ④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지역 ⑤아프리카 지역회의가 있다.

한편, 1997년 11월 1일 별도로 운영되던 UNDCP와 CACP를 통합해 유엔마약 통제 및 범죄예방위원회(ODCCP: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를 설치하여 마약 및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통합된 협력, 조정센터를 마련하였다. 이에 범죄와 마약 관련사업에 관한 협력과 조정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ODCCP 내에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전략 위원회(Strategy Committee)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2002년 10월에는 ODCCP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로 개명하였다.⁷¹⁾

3. 마약류 원료물질 통제

최근에는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국제적 이동과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적 제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료물질이 없으면 마약도 없다(No precursor, no drug)’라는 구호 아래 UN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주도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Operation Cohesion 및 Project PRISM이다.

Operation Cohesion은 과망간산칼륨 국제 감시계획(Operation Purple)⁷²⁾과 무수초산 국제 감시계획(Operation Topaz)⁷³⁾을 통합하여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제 감시프로그램이다. 한편, Project PRISM⁷⁴⁾은 에페드린과 같이

71) 관세청, 앞의 책, p.55.

72) 코카인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인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의 불법 수출입과 전용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과망간산칼륨의 수출·경유·수입국간 수하물 추적 및 혐의 거래 수하물의 사전 통보 등을 주목적으로 하며 1999.3.11일부터 시행.

73) 헤로인 제조에 쓰이는 전구물질인 무수초산의 불법 수출입·전용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 감시계획으로 무수초산(Acetic Anhydride)의 수출·경유·수입국간 수하물 추적을 비롯하여 헤로인 밀거래, 밀조공장 적발 시 무수초산의 출처에 대한 수사 협력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2001.3.1일부터 시행.

74) PRISM: Precursors Required In Synthetic Drugs Manufacturing의 약어.

암페타민계 각성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불법 수출입과 전용을 통제할 목적으로 2002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38개 국가들이 발족한 국제공조 계획으로 참가국은 표준통제규범을 마련하는 등 원료물질의 국내외 유통을 통제·감독하고 불법 물질의 출처를 추적·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⁷⁵⁾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2006년 7월에 Operation Cohesion과 Project Prism에 가입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적인 수출입과 전용이 감지되면 수출입의 사전차단과 관련조직을 검거할 수 있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한편, UN 마약위원회는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채택하고, 그 「부속서」에 대표적인 마약류 원료물질 24가지를 명시하여, 동 물질의 불법적 거래 및 사용 등을 국제적으로 통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 동 협약에 가입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원료물질 24가지(1군 16개, 2군 8개)를 규정하여, 그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통제하고 있고, 1군 16개 품목은 관세법 제226조의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여 수출입시에 허가요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4. 범죄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 대응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의 국제화 조직범죄화 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UNODC에 따르면 마약류 밀거래를 통해 발생한 범죄수익은 전 세계 총 GDP의 0.6~0.9%로 3,480~5,220억 달러, 이 가운데 금융시스템을 통해 세탁되는 불법 수익은 전 세계 총 GDP의 0.4~0.6%로 2,320~3,480억 달러에 각각 달했다고 한다.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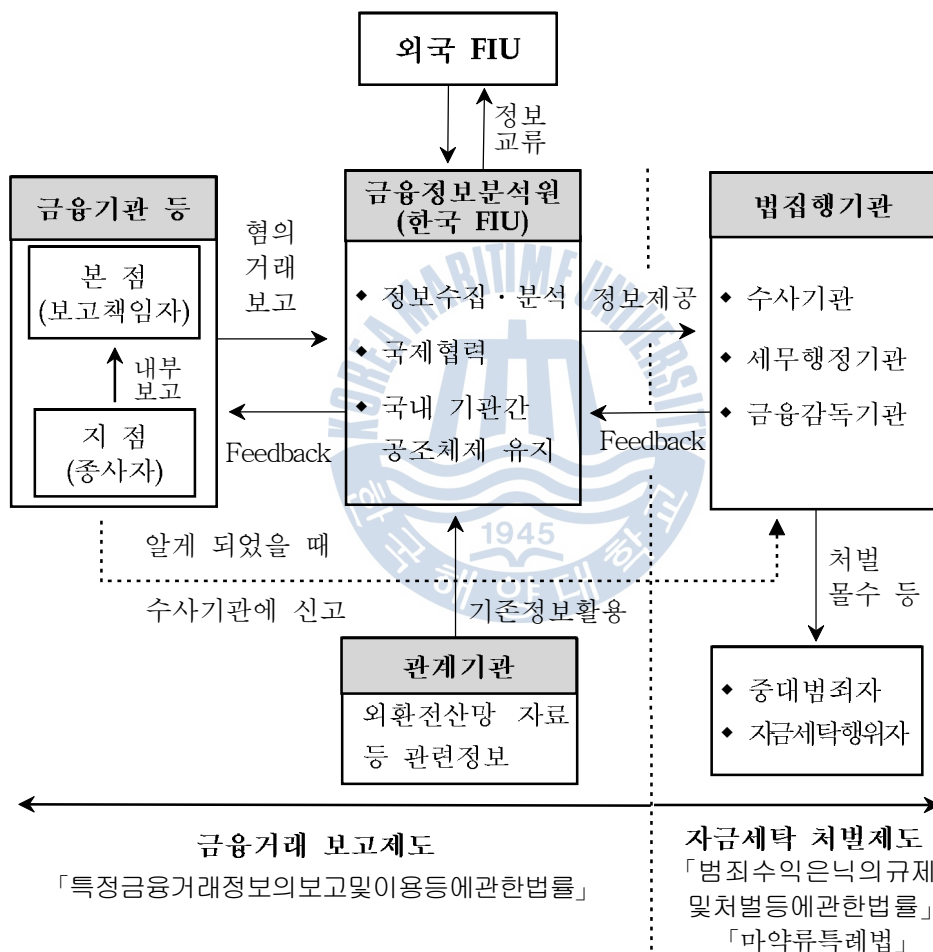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대표적 국제기구로는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미국,

75) 장광현, 2009.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및 통관의 적법성 확인과 관세사 역할, 계간 關稅士 2009년 여름호, pp.22-29, 한국 관세사회.

76) UNODC, 2011. Estimating illicit financial flows resulting from drug trafficking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Vienna, p.7.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일본 등 G-7 정상회담에서 합의로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반(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이 있는데, 그 주요 목적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등 국제금융체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규의 도입과 통제수단을 개발·촉진하는데 있다.⁷⁷⁾

<그림 5> 우리나라의 FIU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 자료: 정진곤, 2003. 금융수사의 이해, 국제범죄와 특수조사실무, 관세청

77) FATF 홈페이지(www.fatf-gafi.org), 2013.3.6일 검색자료.

FATF는 1990년에 자금세탁대책으로 금융실명제 도입, FIU 구축 등 40개항의 권고안을 제시하고(1996년 개정), 참가국 상호간에 금융거래 상호심사와 자금세탁의 추세·기법·대응조치 등을 검토하고, 비회원국들에게는 권고안의 채택을 권고하는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대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가입한 회원국은 34개국 및 2개 지역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는 2006년 7월부터 옵저버로 참여하다가 2009년 10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1995년 6월 미국과 벨기에 주관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전 세계 FIU회의에서 각국 FIU간의 협력강화, FIU 신규설립 지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이 결성되었다. 우리나라는 ①혐의거래보고제도 도입 ②국내의 법 또는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 보고체계 확립 ③자금세탁관련 금융정보기구 설립 등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2002년 6월 동 그룹에 가입하였다.⁷⁸⁾

또한, 지역별로 국제기구로 설치된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Caribbean FATF 등에서도 해당 지역 내 국가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8년 APG에 가입하였고 2001년에 OECD 30개 국가 중 29번째로 FIU를 설치한바 있다.

5. 세계관세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관세청은 2012년 세계관세기구⁷⁹⁾ 산하에 관세범칙관련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회원국간 공조 강화를 위해 설립된 아태지역정보연락센터(RILO AP: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를 국내에 유치 운영하고 있다.

RILO는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 및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마약·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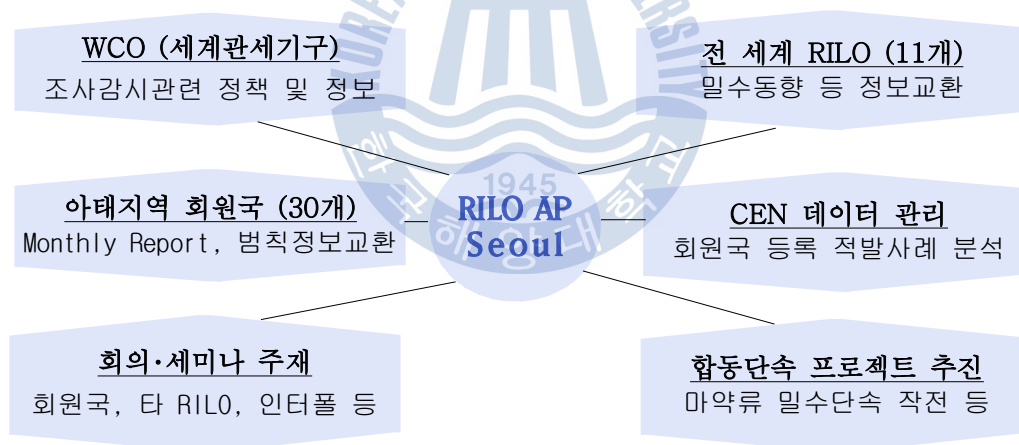
78) 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홈페이지(www.egmontgroup.org), 2013.3.6일 검색.

79)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1952년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로 발족되었고, 1994년에 세계관세기구(WCO)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다. 현재 전 세계 17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고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 제·개정, 상품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관세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감시,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공무원 청렴성, 세관현대화를 위한 능력개발 등이 주된 업무이다.

해물질·CITES 등의 불법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부정무역 등 관세국경범죄 관련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이다. 현재 전 세계 각 지역에 총 11개의 RILO가 설치 운영 중인데⁸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간 관세법칙관련 정보연락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1987년 홍콩에 지역 연락사무소(Regional Liaison Office)를 개설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동 사무소의 주요 기능은 해당 지역내 회원국 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약 등의 밀수관련 적발정보를 WCO 조사정보시스템(CEN: Customs Enforcement Network)에 데이터베이스화 및 관리, CEN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마약·부정무역 등 관세법칙관련 밀수방법·밀수루트·은닉수법 등에 대한 동향분석 및 회원국 전파, 회원국간 관세법칙관련 정보의 교류 지원, 회원국 세관직원에게 대한 정보분석기법 훈련 및 기술지원 등이다.

<그림 6> WCO RILO의 기능 및 업무협력 체계도



* 자료: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

80) RILO 사무소는 아태·남미·중미·중동·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각 1개, 아프리카지역에 4개, 유럽지역에 2개 등 총 11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한국(Asia and the Pacific), 사우디(Middle East), 독일(Western Europe), 러시아(CIS), 폴란드(East and Central Europe), 케냐(East and Southern Africa), 모로코(North Africa), 카메룬(Central Africa), 세네갈(Western Africa), 칠레(South America), 세인트루시아(Caribbean)에 사무소가 있다.

WCO와 RILO는 마약밀거래, 담배밀수, 환경파괴물질 불법이동, 문화재 불법 거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거래 등의 단속을 위해 각종 국제합동단속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한 프로젝트로는 마약류 적발 실시간통지시스템(DSINS: Drug Seizure Immediate Notification System), Sky-net 작전, Westerlies 작전 등이 대표적이다.

DSINS는 홍콩의 제의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정보실시간 교환프로젝트로 2013년 현재 아태지역 총 22개국⁸¹⁾이 참여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 회원국이 자국내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적발정보를 여타의 참가 회원국과 RILO AP에 즉시 통보하면, 동 정보를 입수한 회원국은 밀수루트, 은닉수법, 운반책 등 밀수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2012년말 까지 총 1,995건 6,653kg의 마약류 밀수 적발정보가 참여 회원국간 공유되었다.

Sky-Net 작전은 WCO 주관으로 5개 RILO와 인터폴 지원 하에 68개 회원국 세관이 참여하여 2012년 9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회원국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와 마약류 원료물질의 밀수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작전에서 마약류 밀수에 이용되는 우편물과 특송화물의 주요 이동경로, 송·수하인 형태, 상품 종류, 신고가격, 은닉수법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우범화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 마약류 2,979kg, 카트 2,005kg, 대마류 940kg, 아편 188kg, 코카인 167kg 등 마약류와 원료물질 등 총 941건, 9.5톤을 적발하였다.⁸²⁾

Westerlies는 항공 여행자를 통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메트 암페타민 밀수 단속을 위한 작전으로, 2012년 6월 일본의 제의에 따라 WCO 주관으로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81)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마카오, 몰디브, 뉴질랜드, 파키스탄,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및 베트남.

82) WCO, 2012. 「Customs operation nets exceptional quantities of drugs in postal parcels」, WCO (www.wcoomd.org) press release(20 November 2012), Brussel, Belgium.

실시되었다. 이 작전 실시 배경은 2008년부터 베냉, 감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등 서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지속되고 있어 국제공조를 통한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동 작전에는 아태지역을 포함한 9개 지역 RILO, 인터폴, 유럽·중동·아프리카·아시아·미주 등 WCO 82개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10일간의 작전 기간 중 37명을 검거하고, 대마초 357kg, 코카인 63kg, 메트암페타민 54kg 등 총 575kg, 39,434정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으며, 불법자금 617,400유로와 2,630,676달러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⁸³⁾

6. 주요 국가 마약류 단속체계

6.1 미 국

미국은 1988년 국가 마약통제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및 목표 설정을 담당할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마약통제정책실(ONDCP;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을 설립하고, 불법 마약류의 남용·제조·밀거래·마약관련 범죄 등의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매년 국가마약통제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ONDCP는 2012년도 마약통제전략에서 2015년까지 학생 등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과 만성적 마약류 남용자 15% 감축 등 마약류 소비를 감축하고,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15% 감소, 마약류 투약운전 10% 감소 등 공중 보건과 안전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⁸⁴⁾

ONDCP의 미국 내 마약류 남용실태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매 4분에 한명이 마약치료소에 안치되고, 주말 운전자 약물검사에서 8명중 1명이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이고, 마약류 사용에 따른 생산성·치료·단속 등 미국 내 사회적 손실

83) WCO, 2013. Operation WESTERLIES Final Report, A joint enforcement operation against illicit trafficking in methamphetamine by air passengers, WCO document EN-16.01.2013.

84) ONDCP(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2012. 「2012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비용은 1,930억 달러(1초에 6,120달러, 2007년 기준)에 달했다고 한다.⁸⁵⁾

미국의 마약단속 관련 연방기관에는 마약단속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등이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국경단속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테러와 무기 단속, 국경통과 화물과 사람의 안전, 출입국수속 등 업무와 함께 마약류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2003년 관세청과 출입국이민국을 통합하여 조직된 출입국세관집행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DHS 산하 최대 수사기관이자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연방수사기관으로 소속직원은 약 2만 명이며 50개 주(州)와 해외 47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마약단속청은 수사체계 단일화를 목적으로 1973년 행정명령으로 창설되었는데 당시 특별수사관 1,470명과 7,5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출발하여 2012년 현재 특별수사관 5,000명, 연간예산 20억2천만 달러의 방대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21개 지역본부(Division) 산하에 226개 사무소(Field Office)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65개국에 85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DEA의 주요 임무는 통제물질법 위반 수사, 마약류 정보 수집·분석·배포, 불법마약류 밀거래로 발생한 범죄수익 압수·몰수, 마약수사에 대한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국제마약통제를 위한 UN·인터폴 등에 연락관 파견을 통한 협력 등이다.

ONDCP 결정으로 활용마약정보의 출처 보호 및 정보공유를 위해 1992년 DEA에서 도입한 NDPIX(National Drug Pointer Index) 시스템은 24개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동일사건에 대한 수사기관간 협조, 중복수사 회피, 수사관 안전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며, 담당수사관이 혐의자인적사항과 사건개요를 NDPIX 시스템에 입력하면 즉시 자동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동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의 성명과 연락처를 안내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5) ONDCP, 2012. ONDCP 홈페이지(www.whitehouse.gov/ondcp), 2012.2.2일 검색.

6.2 일 본

일본세관은 1993년 마약류 밀수 타겟팅을 목적으로 동경세관에 국제정보실(International Intelligence Office)을 설치한 이래, 총기류·탈세·돈 세탁·IPR 침해, 테러 등 여러 분야에서 늘어나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대한 수요에 대응키 위해 점차 그 기능과 조직을 확장하였다.

한편, 2000년 7월 동경세관 감시부에 설치된 밀수정보 분석실(National Intelligence Analysis Center)은 정보의 수집·관리, 정보생산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통합 및 분석업무를 담당하며, 밀수정보지, 사후검거분석보고서, 연간 밀수정보분석, Alert 정보 등을 생산·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⁸⁶⁾

동경,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 나가사키, 하코다테, 오키나와 등 9개 지역 세관의 밀수정보조사관은 마약류 등 관련 정보 수집·분석·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세관의 밀수정보조사관은 관할지역의 밀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타 지역세관·국제정보실·밀수정보 분석실 등과 상호 공유한다.

2008년 국제정보실은 정보분석센터(National Intelligence Analysis Center)는 정보공유와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정보분석 및 우범화물 선별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분석센터(National Intelligence Analysis Center)화물정보 및 조사감독센터(National Center of Cargo Information Management & Supervisory Investigator's Office)를 통합되어 일본세관 정보·타겟팅센터(JCITAC; Japan Customs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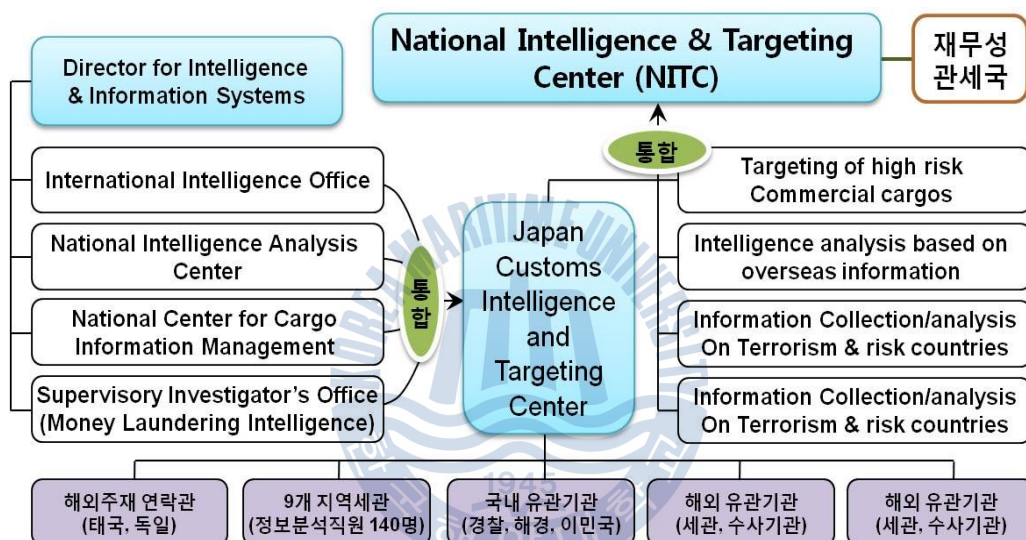
그 후 2011년 7월에는 JCITAC에 타겟팅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가정보·타겟팅센터(NITC; National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로 재차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약 9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동 조직의 주요 기능은 정보수집·분석과 단속작전 기획, 우범화물·여행자·운송기구 타겟팅 및 선색을 위한 선별, 정보제공 및 적발기법 개발·훈련 등이다.⁸⁷⁾

86) 관세청, 앞의 책, p.59.

87) Yuko Nakanodo, 2012. Intelligence Activities of National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 Japan Customs, RILO AP Seminar on CEN and Intelligence Analysis(10-13 July 2012, Seoul)

NITC의 하위조직은 기능별로 국제정보분야, 타겟팅분야 및 자료관리분야 등으로 나뉘고, 국제정보 분야는 다시 국제, 마약, 부정무역·IPR·자금세탁, 총기·대테러, 안전, 공개정보 등 7개 팀으로, 타겟팅 분야는 고위험 화물타겟팅, 해외 부문 정보분석, 테러·위험국가 정보수집·분석, 국내정보 분석, 고위험 여행자 타겟팅 부문으로, 그리고 자료관리 부문은 수출입자료, 화물관련선별관리, 통관 자료분석 등 부문으로 각각 세분된다.⁸⁸⁾

<그림 7> 일본세관 National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 구성



* 자료: Yuko Nakanodo, Intelligence Activities of NITC

6.3 중 국

중국은 1979년 형법에 마약류의 제조·운반·밀거래·밀수입을 범죄로 규정하고, 1990년 「마약단속에 대한 결정」에서 마약류 범죄 종류와 형벌, 복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단, 강제적 중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발표자료 & Masahiro KIKUCHI, 2012. Japan's seizures based on timely analysis & sharing of information from overseas counterparts, Japan Customs, 24th RILO NCP Meeting(31 Oct-2 Nov 2012, Jaipur, India) 발표내용 재편집.

88) 노시교 등, 2009. 정보분석기법 및 위험관리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 관련 해외출장보고, 관세청.

한편, 1987년 개정 해관법에서는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밀수입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 밀수입사범에 대한 조사는 해관법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실제 처벌은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1990년 설치된 국가금독위원회(國家禁毒委員會)는 중국의 마약류 통제 최고 기구로公安부장(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여公安부, 위생부, 해관총서 등 2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국가마약퇴치정책 수립 등 마약류 관련업무를 총괄·조정·감독한다. 1998년 국무원은 마약류 퇴치를 위해公安부 내에 “금독국(禁毒局)”의 설립을 결정하고 마약류 단속임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전국 31개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와 대다수 시(市), 구(區) 등 지방정부는 모두 이에 상응하는 마약단속 기구를 두고 있고, 24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그 관할 204개 장소(市, 州)의 735개 현(市, 區)의公安기관이 마약류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公安부 내 금독국은公安부내에 설치된 마약류 수사 전담조직으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 관련 모든 사건을 수사하며, 국가금독위원회 사무국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해관, 인민무장경찰, 약품감독관리국 등이 해당분야 마약단속법을 집행한다.

세관 마약단속 조직인 해관총서 집사국(緝私局: Anti-Smuggling Bureau)은 1999년 1월 마약류 단속을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국무원의 비준에 의거 관할 밀수범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권한을 행사한다. 종전 중국해관내 밀수담당 부서는 조사국(調查局)이었는데 밀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권한만 있고, 형사 처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마약류 밀수범은公安기관에 이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⁸⁹⁾

집사국은 해관총서에 판공실, 수사1처·2처, 해사처, 정보처 등 12개 처(處)와 일선 42개 직속해관 집사국 및 127개 산하해관 집사분국으로 구성되고, 직원은 본부 100여명 포함 총 7,900여명으로公安부(公安部) 24局 및 해관총서로부터

89) 박의철, 2004. 해상밀수차단을 위한 광역감시체제 구축연구, pp.74-75, 국외단기훈련보고서, 중국북경 중앙민족대학 경제학원대학.

이원적인 지휘를 받는다.

집사국의 주요 임무는 해관 관할구역에서의 밀수사건 및 밀수범죄사건 조사, 밀수단속 정보수집 및 분석, 밀수단속 관련 국제협력 등이다. 집사국은 관할구역에서 모든 밀수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 보세구역 밖의 마약류 사건도 수사할 수 있으나 주로 공·항만 및 국경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건에 주력하고 있다.⁹⁰⁾

6.4 태 국

태국은 마약법(Narcotics Act)과 향정신성물질법(Psychotropic Substances Act)에서 마약류를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수출입금지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태국세관 직원이 마약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마약단속법(Narcotics Control Act) 제14조와 제15조에 의거 마약통제본부(The Office of Narcotics Control Board)로부터 별도의 마약류 수사요원으로 지명을 받아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제27조 및 관세법 제101조에 의해 관세행정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으나 세관의 마약수사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마약류 밀수출입사범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일반 관세관련 범죄와 마찬가지로 1차 조사를 마친 후 경찰에 이첩하고 있으며,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권은 없다.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양하며, 최고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태국 관세청의 마약류 조사단속 업무는 조사감시국(Investigation and Suppression Bureau) 아래 설치된 ‘마약단속 및 정보기술과’ 내 ‘마약단속계’에서 수행하는데, 마약 단속계는 조정, 정보, 단속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팀은 국제협력, 정보팀은 전과자·우범자 등 출입국동향분석, 단속팀은 정보입수시 2~5명 1개조로 각 지역 세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⁹¹⁾

90) 관세청, 앞의 책, p.61.

91) 관세청, 앞의 책, pp.64-65.

한편, 방콕공항세관 마약조사과는 여객청사와 우편센터에 마약조사요원 20여 명을 두고, 마약류 우범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와 우범 우편물에 대한 위협 평가와 동태관찰 등을 통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5 홍콩

홍콩은 마약류의 생산이나 가공 지역이 아니지만, 지역 내 화물 환적·여객 환승의 거점이라는 홍콩 공항만의 지역적 특성을 악용하여, 마약조직들에 의해 마약류 밀수의 중계지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홍콩세관의 마약단속전략은 육해공 출입거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인데,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한 화물·우편물·여행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타겟팅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정보수집 강화, 이온스캔·이동식 컨테이너 검색용 엑스레이·마약탐지견 등 첨단장비 활용, 마약수사·금융조사·화학물질통제 등 첨단 범죄조직 조사를 담당하는 세관마약조사국의 일선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이다.

홍콩세관은 육로·해만·공항의 Control Point에 약 2,500명의 직원들이 마약류 등 밀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본부 정보국(Intelligence Bureau)에는 약 200여명의 직원들은 홍콩세관 관할 전역에 걸쳐 정보 및 위험관리기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단속기관과 공조로 정보교환 및 합동작전 등 대외협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관 마약조사국 산하에는 마약조사그룹(Drug Investigation Group), 금융수사그룹(Financial Investigation Group), 화공품통제그룹(Controlled Chemicals Group) 등 3개의 조직에 총 248명의 직원이 주요 마약류 범죄 수사, 마약범죄 불법수익의 몰수 및 자금세탁 조사, 마약류 원료물질의 허가·통제 및 불법선적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약류 단속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출입경 통로에 엑스레이 검색기, 마약탐지견 등 검색 장비를 배치·운영하고 있다.⁹²⁾

92) 홍콩세관, Leo W.S. Sin, 2005. FLECC 회의 발표자료 요약(2005.4.11-13, 중국 운남성 러강).

제 4 장 국내 마약류 범죄 실태와 밀수단속상 당면문제

제1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실태와 밀수동향 분석

1. 마약류 범죄 실태

2012년도 국내에서 검거된 전체 마약류사범은 총 9,255명으로 이는 전년도의 9,174명에 대비하여 0.9%가 증가하였다. 마약류 사범의 범죄 유형별 검거내역을 보면, 사용사범이 54.9%, 밀매사범 26.6%, 소지사범 4.8%로 사용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마와 향정사범은 사용사범이 각각 67.4%와 5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60.4%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2012년도 마약류 사범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명)

구 분 \ 유형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소지	기타	합계
마약류 별	마약	0	13	16	352	121	14	66	582
	향정	3	292	2,301	0	4,258	361	415	7,630
	대마	0	27	148	60	703	68	37	1,043
합 계 (구성비: %)		3 (0.0)	332 (3.6)	2,465 (26.6)	412 (4.5)	5,082 (54.9)	443 (4.8)	518 (5.6)	9,255 (100)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2.12월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마약류 범죄의 주요 특징은 폭력조직의 마약류 밀수 및 밀매 개입 증가, 37.5%로 여전히 높은 재범률,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및 외국인 사범 증가 등이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제마약통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병의원 등 합법적 치료기관을 통해 불법적으로 공급되는

비만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공급 차단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1 조직범죄화 경향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수는 2009년 1만1,875명을 정점으로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 등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9,255명이 검거되어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조직폭력배들의 마약 밀수와 밀매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즉, 밀반입된 외국산 마약류 중 조직폭력배가 관여한 비율이 2010년 0.7%, 2011년 26%, 2012년 35.2%로 급증했다.

<표 8>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단위: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마약사범	958	1,396	2,198	1,124	759	582
향정사범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대마사범	1,170	1,045	1,712	1,837	1,189	1,042
합 계	10,649	9,898	11,875	9,732	9,174	9,255

*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11, 마약류 월간동향 2012.12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총 26개 파(派) 45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과거 기존 조직폭력 범죄자들이 주로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조직자금 확보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직접 밀거래하는 등 공급조직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³⁾

2012년에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총 50.1kg으로 2011년 110.9kg에 비해 53%가 감소했으나,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밀반입량은 12.4kg으로 2011년 5.9kg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압수된 마약류 가운데 외국

93) 대검찰청 마약과, 앞의 언론보도자료.

에서 밀반입된 양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이 같은 수치는 1년 전인 2011년의 국외 밀반입 마약류 22.9kg과 비교할 때 53.2%가 급증한 것이다.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사범이 7631명으로 82.5%를 차지했고, 대마사범 1042명(11.3%), 양귀비 등 마약사범 582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모두 359명으로 전년대비 38.6% 늘었다.

1.2 높은 재범률

201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7.5%로 향정·대마·마약사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향정사범의 재범률은 40%대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2년에 39.1%를 기록하였다. 마약류 범죄의 원인별 발생현황을 보면, 중독 25%, 유혹 17%, 영리 9.8%, 호기심 8.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한 재범률이 가장 높고, 영리목적 마약류 범죄는 향정사범이 11.5%를 차지하여 다른 범죄 원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혹과 호기심 등에 의한 범법율도 높아 재활치료와 함께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⁹⁴⁾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우리나라의 치료보호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전체 투약사범 4,229명 대비 9.2%에 해당하는 389명, 그리고 2007년 410명(6.8%)을 정점으로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투약사범 전체 대비 0.6%인 28명에 불과하였다.⁹⁵⁾

마약류 투약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의존성과 금단 현상 등으로 투약사범의 재범률이 높음을 감안할 때, 치료보호 비율이 3~9%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⁹⁶⁾

94) 대검찰청, 앞의 보도자료.

95) 박성수, 2011.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 개선방안」, 矯正研究 제50호, p.201. 국내 최대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인 국립부곡병원이 2011년 4월~2012년 9월까지 마약류 병동 운영을 중단했었다.

96) 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의거 전국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 19개를 지정하고, 검찰의 의뢰나 자의입원 신청에 따라 중앙(시도)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치료결정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홈페이지(www.mw.go.kr) 2013.3.10일 검색 자료).

<표 9> 연도별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보호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약사범	4,229	6,013	5,719	6,103	5,994	5,365	5,082
치료보호	389 (9.2%)	410 (6.8%)	366 (6.4%)	284 (4.7%)	231 (3.8%)	81 (1.5%)	28 (0.6%)

* 자료: 박성수, 2011.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 개선방안」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1.3 마약류 밀반입 및 외국인 사범 증가

2012년도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은 35.1kg으로 전년도의 22.9kg 대비 53.2%가 증가했는데, 주요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 23.4kg, MDMA 4kg, 대마초 2.7kg 등이었다. 이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주한 미군 등이 늘면서, 인터넷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도 보다 4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거된 마약류 사범 가운데 외국인은 2008년 928명에서 2011년 27개국 295명까지 감소했지만, 2012년에는 31개국 359명으로 전년대비 38.6%가 증가했으며 국적별로는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태국 순이었다.

<표 10>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단위: 명)

마약류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마 약	29	32	43	12	26
향 정	727	547	390	208	185
대 마	172	311	425	75	148
합 계	928	890	858	295	359

* 자료: 대검찰청, 2013. 2012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언론보도자료)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은 대마사범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부터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이후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 대마사범의 점유율이 향정사범보다 조금 높았으나, 2011년과 2012년에 다시 향정사범이 대마사범보다 높은 점유율(각 70.5%, 51.6%)을 보였다.

최근 외국인 향정사범의 증가는 태국인과 중국인에 의한 메트암페타민 사범의 증가, 미국인과 캐나다인의 합성마약류 사범 증가에 따른 것이다. 대마사범도 태국·스리랑카 등 동남아인 근로자, 미국·캐나다 등 원어민 외국강사, 러시아 선원 등의 사용사범이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향정사범이 감소한 반면 대마사범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주한미군 등의 대마사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 의약용 마약류의 심각한 오남용

최근에는 의약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2011년 2월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⁹⁷⁾은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이다.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의 관련자는 주로 연예인, 의사, 제약회사 직원, 병원 사무장, 유통업소 종사자 등이었는데, 2012년도 불법 유통 단속에서 전년도 적발량 2,004 앰플의 10배에 달하는 20,202 앰플(앰플 당 20mℓ)이 적발된 것으로 보아 불법 남용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내 마약류 단속기관은 합동으로 불법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병의원 74곳, 의사 94명, 간호사 6명 등을 적발하였다.⁹⁸⁾

97) 프로포폴(Propofol)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맥마취제로 반응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며 부작용이 적어 외래환자의 수술과 내시경 검사 등 간단한 시술에서 전신마취의 유도제 및 시술, 진정,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사용이 허가되었고, 2011년 2월 전문의약품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에 불면증치료, 피로회복 및 환각 등의 목적으로 오남용하고 상습 투약하여 정신적 의존성과 중독을 유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2. 아름다운 젊음, 2012 Winter Vol.67. pp.12-14).

98) 대검찰청 마약과, 앞의 언론보도자료.

식약청이 발행한 비만치료제 처방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치료를 위해 병·의원에서 약물을 처방받은 우리 국민 788명의 처방전 2,633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0.4%인 2,116건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여 있었고, 788명 중 71.2%에 해당하는 554명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554명 중 37%가 정부의 권고사항인 30일을 초과해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고, 3개월 이상 처방받은 사람도 4.7%에 달했다. 향정약품은 보통 빠른 경우 4주 이상 먹으면 중독, 즉 의존성이 발현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치명적인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⁹⁾

유엔 산하 국제 마약류 감시기구인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엔의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의 Schedule IV에 마약류로 등재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량이 마약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⁰⁾ 동 보고서는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 등재된 자극제 14종(스케줄 4)이 식욕감퇴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자극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을 들었다. 실제 향정약품 중 펜디메트라진 계열의 식욕억제제 사용량은 2005년 기준 세계 2위였다. 이런 상황을 주시하던 INCB는 한국 정부에 향정 식욕억제제 사용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¹⁰¹⁾

2. 마약류 밀수동향

2012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는 총 232건 33.8kg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건수 33%, 중량 15%가 각각 증가하였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이

99) (사)소비자시민모임, 2008. 「비만치료제 소비자행태조사 및 효율적 사용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신동아 591호(2008.12월)에서 재인용, pp.110-121.

100) 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의 Schedule IV에 등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알프라졸람, 바르비탈,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등이며, 1978년 동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국내법에서 이들 향정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101)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 2006.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Report 2006」, p.18.

116건 20.9kg으로 가장 많고, 신종 마약류인 JWH-018 등 합성대마가 27건 7.0kg, 대마 46건, 2.5kg 순이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20.9kg은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69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국내 단속기관 총 압수량의 74%에 해당한다.¹⁰²⁾

밀반입 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 42건 11,977g, 특송화물 84건 4,758g, 해상여행자 10건 902g, 국제우편물 91건 7,664g, 기타 선원 등에 의한 밀수 5건 8,457g이었다. 적발 단서별로는 세관 자체적발이 176건 21,117g으로 전체 압수량의 62.5%를 점했고, 외부정보에 의한 적발이 56건 12,649g으로 전체 압수량의 37.5%를 점했다.

<표 11>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적발현황

(단위: 그램)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메트암페타민	80	16,671	71	18,480	74	6,414	67	18,269	116	20,976
대 마	69	16,641	44	20,909	53	5,451	42	2,032	46	2,472
합성대마	-	-	1	30	31	605	41	3,059	27	7,037
헤로인	-	-	4	1,895	1	7	1	1	2	15
코카인	4	8,869	2	59	1	1	4	2,111	3	9
기타 마약류	8	239	22	778	39	1455	30	3,868	64	3,248
원료물질 등	8	0	6	-	1	18	1	-	1	-
합 계	169	42,420	150	42,151	200	13,951	186	29,340	259	33,757

1. 기타 마약류는 MDMA, 크라튬,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2. 전체중량 대비 특정품목의 중량이 과다하여 통계를 왜곡시키는 원료물질, 살 빼는 약 등의 중량은 제외
3. '11년 이후 다품목 사건을 각 품목별로 검거 건수로 집계(사건수: 11년 176건, 12년 232건)

* 자료: 관세청 국제조사팀,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2008-2012

102) 통상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1회 투약분이 0.03그램 정도이므로 1kg은 약 3만3천여 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전국 평균 1회 투약분 밀거래 가격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관 공무원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및 반출입화물 검사 중 적발이 103건 14,717g, X-ray 검색에 의한 적발 48건 3,025g, 마약탐지견에 의한 적발이 25건 3,375g 등이었다.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의 출발지별 적발내역은 중국 84건, 미국 50건, 베트남 18건, 영국 13건, 필리핀 9건 등이었다.

검거단서별 마약류 적발현황을 보면, 세관검사 103건(44%), 외부정보가 56건(24%), X-ray검색 48건(21%), 마약탐지견 25건(11%)이었다. 외부정보 없이 검사나 조사업무 등 세관자체 적발 비율이 2008년 58%, 2009년 74%, 2010년 76%, 2011년 71%, 2012년 76% 등 5년 평균 71%로서 검찰·경찰 등 외부 단속기관 정보나 밀수신고를 활용한 적발비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2년 외부 기관과의 공조나 제보에 의한 적발현황을 보면 경찰공조 26건, 검찰공조 12건, 밀수신고 6건, 해외정보 1건, 유관업체 정보 7건 등이었다.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은 우리나라를 중계지로 이용한 메트암페타민 대량 중계밀수의 증가, 특수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 목적의 소량 마약류 밀반입의 증가, JWH-018 등 신종 마약류의 지속적인 적발 등이다.

2.1 마약류 밀수루트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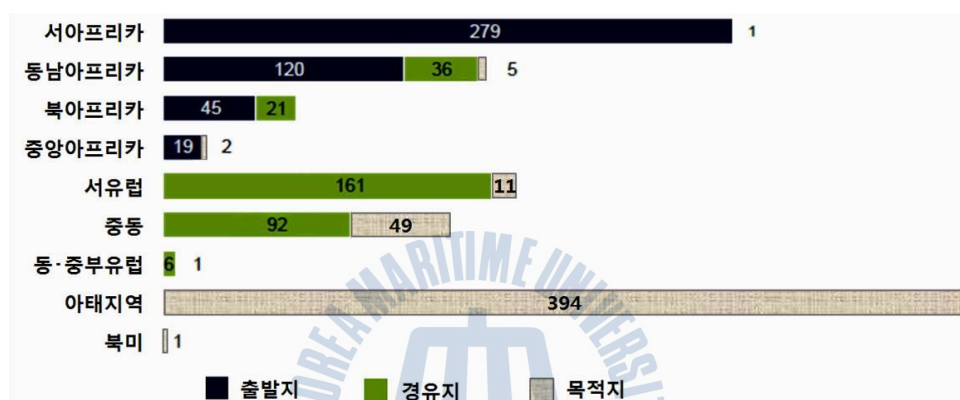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마약류 밀수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면서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루트도 다양화되어 2011년 28개국에서 2012년 31개국으로 늘어났다. 국내 조직 폭력배들이 외국에서 밀반입한 마약류의 3분의 2는 국내에 유통되고 나머지는 일본으로 대부분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공급지에도 변화가 있어 2007년까지는 국내에서 적발된 메트암페타민의 95%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었으나, 2012년에는 중국의 비중이 51.6%로 감소했다. 또한, 종래의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한 후 일본으로 향하던 전통적인 마약류 밀수경로에서 벗어나 피지, 케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등으로 공급원이 다원화되고 밀수경로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 지역이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의 전 세계 주요 공급원

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세계관세기구 주관 마약단속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프리카 ATS 밀수 적발사례 463건 가운데 394건의 최종 목적지가 아태지역이었고, 서유럽과 중동 지역이 중계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기간 중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중계밀수 되었거나 국내로 밀반입된 사례는 18건으로 그 중 17건이 인천공항을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³⁾

<그림 8> 아프리카 ATS 밀수 적발현황(2008.1.1~2012.11.25)



* 자료: WCO, 2013. Operation Westerlies Final Report

2.2 밀반입 수단의 다양화

개인소비 목적의 소량 마약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주로 이용하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2010년 39건, 2011년 42건, 2012년 84건이 각각 적발되었다.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서 자가소비목적으로 구입한 마약류를 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메트암페타민 대형 중계밀수(2건, 4.2Kg, 127억) 적발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의 연속적인 메트암페타민 밀수사건(6건 12kg)의 영향으로 압수량은

103) WCO, 2013. Operation Westerlies Final Report, Brussel, Belgium. Operation Westerlies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태지역으로의 메트암페타민 밀수 단속작전으로 WCO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감소했으나,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 위주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소형 밀수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단속건수가 27% 증가하였다.¹⁰⁴⁾

<표 12> 관세청의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적발현황

(단위: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여행자	항 공	25	37	32	26	42
	해 상	13	9	13	8	10
화 물	우 편 물	102	73	112	92	91
	특송화물	13	27	39	42	84
기 타		16	4	4	6	5
합 계		169	150	200	174	232

* 자료: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2008-2012

2.3 한국경유 중계밀수의 증가

최근 우리나라를 중계지로 이용한 메트암페타민 대량 중계밀수가 2010년 2건 2.9kg, 2011년 4건 7.8kg, 2012년 6건 16kg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중국, 피지,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각각 출발한 메트암페타민 중계밀수가 총 6건 16kg이 적발되었다.

2012년에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 6건은 모두 메트암페타민으로 출발지별로는 중국 1건 7.3kg, 필리핀 2건 3.5kg, 피지 1건 2.5kg, 케냐 1건 1.8kg, 캄보디아 1건 1kg이었고, 최종 목적지는 일본 4건 12.6kg, 미국령 괌 2건 3.5kg이었다. 이들 사건에 관련된 마약류 운반책은 한국인 3명과 영국인, 중국인, 케냐인 각 1명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마약류 중계밀수의 경유지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세계 각지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인천공항의

104) 관세청, 2013. 국제범죄 단속동향 및 국내외 적발사례(2012-12월호), p.4

편리한 항공망과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악용하여 밀수경로를 세탁함으로써 단속기관의 적발을 피하려는 밀수조직들의 의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3> 한국경유 마약류 중계밀수 단속현황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건 수	8	5	9	14	2	5	6
적발량(g)	29,133	28,718	19,816	29,977	2,966	9,938	16,056

* 자료: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2006-2012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마약류 중계밀수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최종 목적지 또는 출발지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유 마약류 중계밀수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캐나다 세관, 2008년 1월 「네팔⇒한국⇒캐나다」 루트 대마수지 147kg 적발
- ◆ 한국세관, 2008년 8~9월 「브라질⇒한국⇒일본」 루트의 코카인 2건 8.8kg 적발
- ◆ 한국세관, 2009년 「중국· 터키· 남아공⇒한국⇒일본」 루트 메트암페타민 8건 적발
- ◆ 한국세관, 2009년 「캄보디아⇒한국⇒대만」 루트 헤로인 2건 1.56kg 적발
- ◆ 일본세관, 2009년 6월 「베트남⇒한국⇒일본」 루트 메트암페타민 6.8kg 적발
- ◆ 한국세관, 2010년 「중국· 가나⇒한국⇒일본」 루트 메트암페타민 2건 2,966g 적발
- ◆ 한국세관, 2011년 「대만· 말리· 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일본」 루트 메트암페타민 4건 7,838g 적발
- ◆ 한국세관, 2011년 5월 「파나마⇒한국⇒미국」 루트의 코카인 밀수 2.1kg 적발
- ◆ 한국세관, 2012년 「중국· 피지· 필리핀· 캄보디아⇒한국⇒일본· 괌」 루트의 메트암페타민 밀수 6건 16kg 적발

위의 적발사례에서 우리나라는 인접한 일본뿐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등 미주지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마약류 밀수의 중계지로도 빈번히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약류 밀수의 중계지로 이용되는 나라들일수록 자국 내 마약남용이 크게 확산되는 사례가 있어 경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저널리스트 모이제스 나임(Moises Naim)은 “이제 어느 국가도 자신이 국제 마약 거래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스스로가 단지 ‘중간 기착지’일 뿐이라고 오랫동안 착각해온 국가는 어느 순간 그들이 주요 공급자이거나 수요자, 혹은 둘 다가 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라고 경고한 바 있다.¹⁰⁵⁾

멕시코의 경우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 남미의 공급지로부터 최종 소비자인 미국으로의 코카인 밀수 중계지로 이용됨에 따라 국내 마약류 문제가 심화되었고, 미국의 경우도 초기 마약통제정책의 실패로 결국은 어떠한 대책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천문학적인 수치의 예산을 쏟아 붓게 된 선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4 신종 마약류 밀반입 증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2012년도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압수량은 총 4.7kg으로 전년도의 1.1kg에 비하여 4배가 증가했다. 메트암페타민 등 전통적인 마약류 소비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주춤하는 사이 인터넷 주문을 통한 특송화물 등으로 JWH-018나 MDPV와 같은 신종 마약류를 반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¹⁰⁶⁾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새로운 향정신성물질을 ‘순수 또는 제조상태의 새로운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물로 1961년 「UN 마약단일협약」과

105) 모이제스 나임(Moises Naim), 이진 譯, 2007. 불량 경제학(Illicit: How Smugglers, Traffickers, and Copycats Are Hijacking the Global Economy), p.105, 청림출판.

106) JWH-18은 최초 합성자인 Clemson 대학의 유기화학자 Jhon W. Huffman의 이름에서 명칭이 붙었고, CP-47497, HU-210 등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로 망상, 도취감 등 환각효과가 기존 대마초에 비해 2배 이상 강하며 한번 흡연시 6-8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한다. MDPV(Methylene-dioxy- pyrovalerone)은 'Bath salts'로도 불리며 미국에서는 Cloud 9, Ivory, Ocean 등의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1971년 「UN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1961년 협약의 스케줄 I, II, IV 또는 1971년 협약 스케줄 I, II, III, IV에 등재된 마약류와 유사한 공중보건의 위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⁰⁷⁾

신종 마약류에는 대마초의 환각성분 THC(Tetra-hydro-cannabinol)를 화학적으로 조제한 합성대마와 식물성 마약 카트의 주성분인 케치논을 합성한 합성 케치논이 주류를 이루며, 이들 마약류를 통상적으로 합성마약류라고 부르기도 한다.¹⁰⁸⁾

법망에 의한 통제를 피하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일부 변형한 변종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해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bath salts'(입욕제), 'herbal incense'(허브 향), 'legal high'(합법) 등의 용어로 마치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기도 한다.

2.5 외국인 마약류 밀수의 지속적인 적발

최근 5년간 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사범 수는 총 1,161명으로 그 중 36.3%에 해당하는 421명이 외국인 밀수사범이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2년도 검거자 수는 91명으로 전년도의 74명에 비하여 다시 증가하였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국적별 검거자수는 미국인 154명, 중국인 70명, 캐나다인 35명, 일본인 19명, 러시아인 16명, 영국인 14명, 태국인 12명, 남아공인 9명, 나이지리아인 9명, 대만인 8명, 필리핀인 7명, 싱가포르 7명 등이었고, 모두 32개 국적의 사람들이 검거되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 421명 가운데 영어 강사 등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81명으로 5명중 한 명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자가

107) European Commission, 2011.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the assessment of the functioning of Council Decision 2005/387/JHA on the information exchange, risk assessment and control of new psychoactive substances, Brussels, p.2.

108) 카트(Khat)는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및 아라비아반도 지역에 자생하는 관목의 일종으로 잎사귀에는 암페타민과 유사한 환각효과를 주는 성분인 Cathione과 Cathine이 함유되어 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신적 의존을 유발하는 마약류로 분류했으며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통제대상 약물로 지정했으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일부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생산 및 거래되고 있다.

소비용으로 대마초 등을 밀반입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며, 2000년대 초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란인에 의한 아편밀수, 태국인에 의한 야바(Yaba) 밀반입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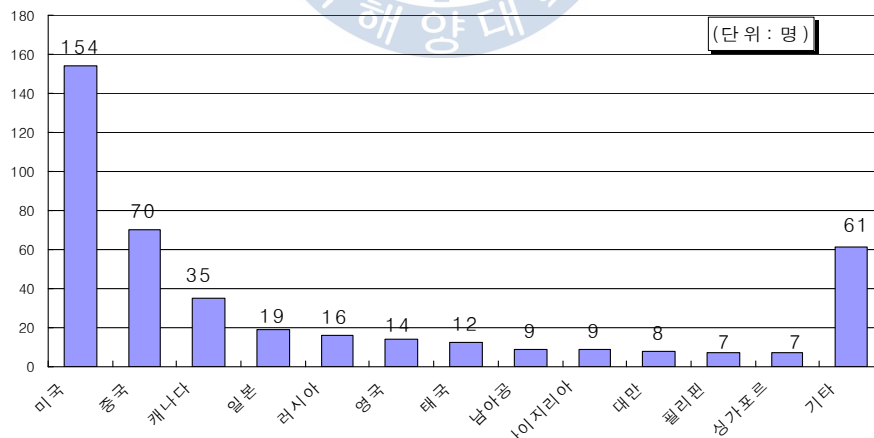
<표 14>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검거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검거자	216명	205명	239명	203명	298명
외국인 사범	76명	85명	95명	74명	91명
외국인 비율	31.2%	41.5%	39.7%	36.5%	30.5%

* 자료: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2008-2012

한편, 과거에는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최근에는 아프리카, 미주, 유럽 등 세계 각지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마약류 범죄조직이 우리나라를 국제마약 밀수의 중계지로 이용하고 있고, 합성마약류 처럼 생산지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공급지가 다변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9>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검거현황(2008~2012년)



* 자료: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2008-2012

2.6 마약류 원료물질의 밀수출입

우리나라는 한때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과망간산칼륨, 무수초산 등 마약류 원료물질이 마약류 주요 생산지로 수출되어 마약류 제조에 불법적으로 전용된 사례가 있다.¹⁰⁹⁾

우리나라와 관련된 적발사례로는 1999년 콜롬비아 조직이 코카인 밀조국인 콜롬비아로 과망간산칼륨 22톤을 폴리에틸렌으로 위장 수출한 사건과 2001년 이란인이 국내에 위장회사를 차린 후 무수초산 91톤을 직물원단으로 신고하여 헤로인 밀조국인 아프가니스탄으로 위장 수출한 사건이 있다.¹¹⁰⁾

한편, 201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의약품 제조용으로 합법적으로 수출된 물품에 메트암페타민 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어 마약류 관련법령 위반으로 태국 당국이 압수한 사례도 있다.¹¹¹⁾

최근 국제사회는 '원료물질이 없으면 마약도 없다'는 모토 아래 마약류 원료물질로 이용되는 화공약품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용 등으로 다수의 마약류 원료물질을 교역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 승인요건 및 확인절차의 강화 등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5> 관세청의 마약류 원료물질 적발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밀수출	건수	4	1	-	-	-
	수량	13,350톤	15.6톤	-	-	-
밀수입	건수	4	5	1	1	1
	수량	1,011톤	1.6톤	49정	84.6톤	3.2kg

* 자료: 관세청,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2008-2012

109) 자연에서 채취되거나 화학적 합성을 통하여 마약류를 합성할 때 필요한 원료, 용제, 산화제 등을 마약류 원료물질이라고 하며, UN의 88협약에서는 국제적 통제대상 원료물질 22가지를 규정한다.

110) 관세청, 2006. 국제 마약원료물질 통제프로그램 가입, 언론보도자료(2006.7.10).

111) Thai Customs Administration, 2012. Thailand's Asia Pacific Customs News Issue 40, p.10.

제2절 우리나라의 마약류 단속체계와 통제전략

1. 마약류 단속법규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규제법규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7년에 당시에 시행되던 마약취제령(미군정법령 제119호, 1949년 11월 11일)을 대체하여 마약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1976년에는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층에서 대마초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규제강화를 위해 법률 제2895로 「대마관리법」을 제정하고, 대마를 습관성의 약품의 범주에서 분리하여 대마의 재배와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였다.

한편, 습관성이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1970년에 제정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1979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품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¹¹²⁾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도 마약법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게만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허용하되 약물취급사고 보고의무, 취급기록의 작성비치 의무 등을 부과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자의 중독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별된 자를 치료,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독물과 극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1963년 법률 제1492호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입법 당시 동법에서 규제하는 독극물은 약물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층에서 본드, 신나 등의 흡입행위가 만연하자,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0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신나·접착제·도료 등의 환각물질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112) 조은석, 김광준, 200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pp.211-2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 후 1990년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종래의 독극물 관련 법률을 대체하는 법률로서 화학물질의 유행성을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환각물질의 섭취, 흡입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한 소지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판매,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아편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아편을 흡식하거나, 아편 또는 아편 흡식기구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소지를 금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넓은 의미의 아편뿐만 아니라 모르핀 또는 그 화합물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아편과 그 화합물을 마약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관련 범죄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법인 형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법의 규정은 사문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³⁾

1995년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의 마약류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마약류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밀수출입 등 일부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월 12일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정비하고 기존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고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하였다.¹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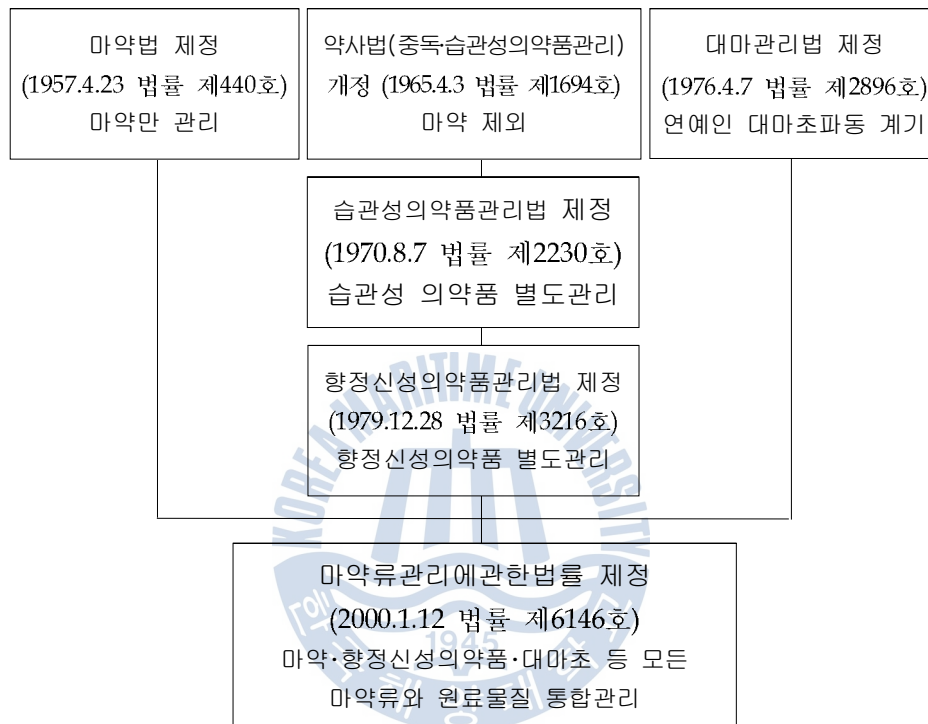
동 법률은 불법 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한의사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 국민 예방활동과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113) 조은석, 김광준, 위의 책, p.214.

114)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의 책, pp.1-2.

한편, 그 밖에 현행 마약류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 6824호,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98호로 두 번에 걸쳐 개정하였다.

<그림 10> 마약류 관련 법률의 변천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서

2. 국내 마약류 단속조직

2.1 마약류 대책협의회

마약류 문제와 관련하여 단속·치료·재활 등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의 구축과 마약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훈령 424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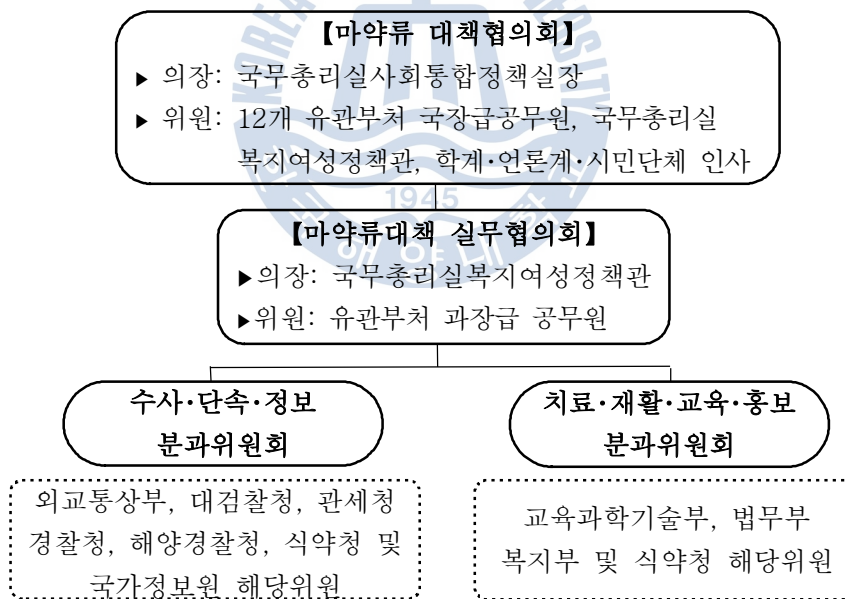
대책 협의회'가 설치되었다.

마약류대책협의회의의 주요 임무는 마약류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마약류 수사·단속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간 협조와 국제협력,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재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지원,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 지원·조정 등이다.

마약류대책협의회의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 14인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고루 갖춘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5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¹¹⁵⁾

<그림 11> 우리나라의 마약류대책협의회의의 구성



* 자료: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홈페이지(<http://team.mw.go.kr/drug>)

115)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홈페이지(<http://team.mw.go.kr/drug>), 2013.3.28일 검색.

2.2 검찰청

1989년 이전 한국의 마약류 범죄 단속권은 검사의 지휘 아래 경찰청 및 보건 복지가족부에 속해 있었으나, 보다 효율적인 마약류 정책수립 및 국제공조채널 강화를 위하여 1989년 2월 대검찰청 강력부 소속의 마약과를 설립하고,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주요 지검 및 지청에 마약수사반을 설치하였다.

그 후 1996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마약수사과 설치, 2001년 4월 대검찰청 마약과를 마약부로 개편하고, 2005년 2월 대검찰청 마약부를 마약조직범죄부로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의 마약수사부와 수원·대구·광주지검의 강력부를 마약 조직범죄 수사부로 각각 개편했으며, 2009년 12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부를 강력부로 개편하는 등 수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다.

한편, 1995년에는 검찰청 내에 마약수사 직렬을 신설하여 현재 대검찰청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20개 지청, 7개 공항, 5개 항만 등에 276여명 마약수사관을 배치하였다.¹¹⁶⁾ 대검찰청 강력부 내 마약과는 국내 마약류 범죄 관련 정책수립과 운용, 수사지원 등 국내 협력, 마약류범죄 관련 국제형사사법 공조·범죄인인도 등 국제공조 수사에 관한 국제협력,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ADLOMICO) 개최, 마약류 범죄 통계관련 자료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2월 대검찰청은 불법 마약류 공급조직의 국제화·지능화·광역화·마약류 밀수출입 경로의 다변화와 마약류 밀반입 급증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업무 전담을 위해 관세청과 함께 ‘마약정보합동분석팀’을 대검찰청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 키 위하여 2003년 1월 1부터 검찰 마약수사요원과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2.3 경찰청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 수사조직은 1991년 8월 1일 경찰청 형사과 내에 마약계

116)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2012.2.7일 검색.

신설을 시작으로, 2000년 3월에는 형사과가 마약지능과로 개편되었으며, 2000년 11월에는 서울 등 7개 지방청에 마약계, 전국 120개 1급지 경찰서에 마약수사 전담반을 각각 설치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경찰청에 마약수사과를 신설하고 강원청 등 7개 지방청에 마약계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2003년 2월에는 경찰서 마약전담반 120개를 86개로 조정하고 각 지방청 마약계의 전담인력을 90명에서 121명으로 보강하는 등 마약류 범죄 수사체계를 개편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전국의 14개 지방경찰청에 기존의 마약계를 마약수사대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도 121명에서 216명으로 대폭 확충했으며, 전국 경찰서에 단순 마약사범 수사요원 761명을 지정 운영하였다. 한편, 2007년 1월에는 지방청 마약수사대 인력을 증원하고, 전국 30개 경찰서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전담인력을 300여명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외국의 경찰 등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64년 인터폴에 가입한 후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을 설치·운영하며, 전 세계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공조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25개국 42개 공관에 48명의 경찰주재관을 파견하여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마약·테러 등 국제범죄 관련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¹¹⁷⁾

<표 16> 우리나라 경찰청의 해외주재관 파견 현황(2009년)

구분	계	아태지역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국가	25	11	2	4	6	2
공관	42	22	6	4	8	2
인원	48	28	6	4	8	2

* 자료: 경찰청, 2010 경찰백서, p. 305

117) 경찰청, 2011, 2010 경찰백서, pp.299-300. 인터폴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총회, 집행위원회, 사무총국 및 188개 회원국의 국가중앙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은 각 회원국의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2.4 관세청

관세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 4245호)」 제6조 14호에 의거 '외국을 왕래 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보세구역에서 마약류를 적발한 즉시 검찰에 인계하던 것을 1990년 8월 1일부터는 공항만과 보세구역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항만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밀수사건은 관할구역 밖에서도 검찰과의 합동수사 등의 형태로 마약범죄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권 등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12월 검찰과 「마약류사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편성·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서울 등 6개 지역에 세관·검찰합동수사반을 편성하고, 세관직원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 밖에서의 마약정보 수집 및 내사를 금지하고 세관적발사건은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도록 하였다.

2002년 1월 25일에는 「대검찰청과 관세청간 마약수사 협력합의서」에 따라 '대검찰청·관세청 마약정보합동분석팀'을 구성하였으며, 공·항만과 보세구역 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건은 세관에서 단독수사를 하기로 하였다.

한편, 마약류 범죄 수사관련 관할구역의 수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210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조 규정을 따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관세청 「범죄조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관세청의 마약류 조사 전담조직은 본청의 국제조사팀 내에 마약계 및 국제정보계,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와, 서울세관·부산세과·인천세관·김해세관에 각 1개의 마약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37개 공항만 세관에는 밀수단속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조사요원들이 일반밀수·외환범죄 등 관세관련 범죄와 함께 마약류 밀수 단속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2.5 기 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에 대한 감시·수사·단속의 업무보다는 마약류 중 식품·의약품과 관련하여 사전적 의미의 감시·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청 내 의약품안전국에 마약관리과를 두고 마약성분의약품 및 식품의 합법적 사용에 관한 업무, 마약류 관리상의 사후관리 및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 마약류 국제협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국내외 거점을 통해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류 국내 밀반입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 경찰, 세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마약퇴치를 위한 정보교류 및 공조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세계 곳곳에 정보요원을 파견하여 국제정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관세청 등은 국제화·조직화 되고 있는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¹¹⁸⁾

3. 우리나라의 마약류 통제전략

우리나라의 마약류 퇴치전략은 대검찰청 마약과 창설 이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범정부적 대책으로서 1990년 “국가 마약퇴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동 전략의 4대 기본목표는 ①마약류 공급 강력 차단 ②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 ③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④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등이며, ‘마약류 없는 사회 건설’ 및 ‘국제적 마약퇴치·협력 모범국가’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¹¹⁹⁾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단속에 의한 공급의 차단과 수요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경찰·세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부처에서 분야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를 보면 공급차단과 수요억제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공급차단을 위한 단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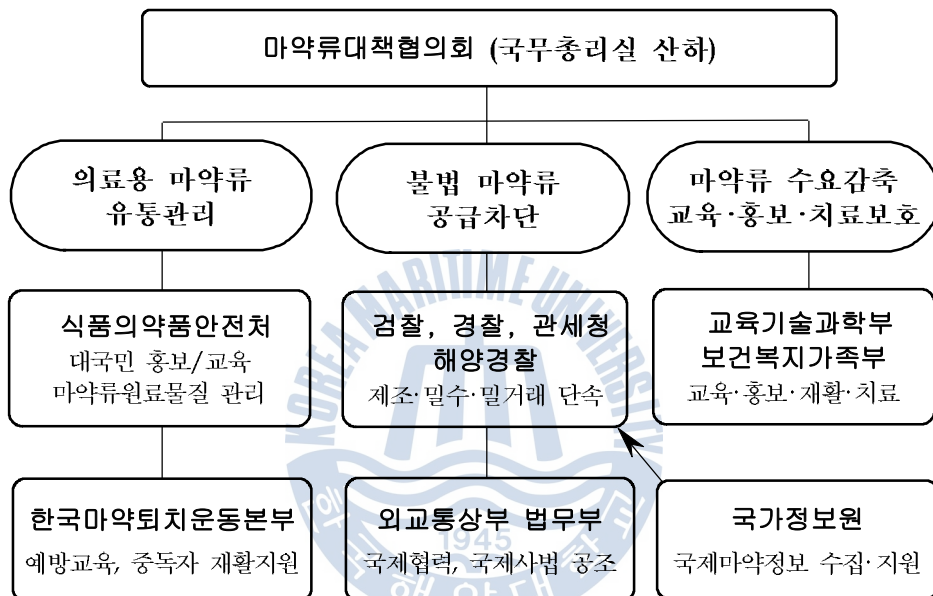
118) 박성수, 김우준, 2009. 주요국가 마약류 감시단속기관 체계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p.151.

119) 대검찰청, 1999. 국가마약퇴치전략(권오성 등, 2006.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연구」 재인용).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¹²⁰⁾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 등으로 수요억제를 위한 재활치료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급차단, 수요억제 및 남용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¹²¹⁾

<그림 12> 우리나라의 마약류 통제 및 관리체계



* 자료: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신의기) & 마약류 관련제도 소개(김희선) 재구성

120) 신의기, 201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1), pp.272-27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1) 김희선, 앞의 발표자료.

제3절 관세행정 환경변화와 마약류 밀수단속상 당면문제

1. 마약류 단속기관으로서의 관세청

관세청은 관세국경(國稅國境)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항만 등 보세구역이라는 전속적 활동영역을 가지고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 우편물, 선박, 차량, 항공기, 그리고 출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영장 없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¹²²⁾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제3국으로 밀수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화물과 여행자에 대하여 프로파일링(Profiling),¹²³⁾ 타겟팅(Targeting) 등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고위험 우범 화물과 여행자를 선별적으로 검색하는 한편, 정보와 첩보의 수집·분석·평가를 통하여 밀수우범 화물·혐의 여행자에 대한 검색과 조사 등의 업무를 병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세관의 마약조사 요원은 내부직원·검찰·경찰·국정원·자체정보원·유관업체 등을 통하여 상시 정·첩보 수집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여행자·우편물·특송화물·일반화물 등에 대한 정보분석과 함께 우범성판별기법,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 밀수출입 우범화물을 선별하여 정밀검색 등 단속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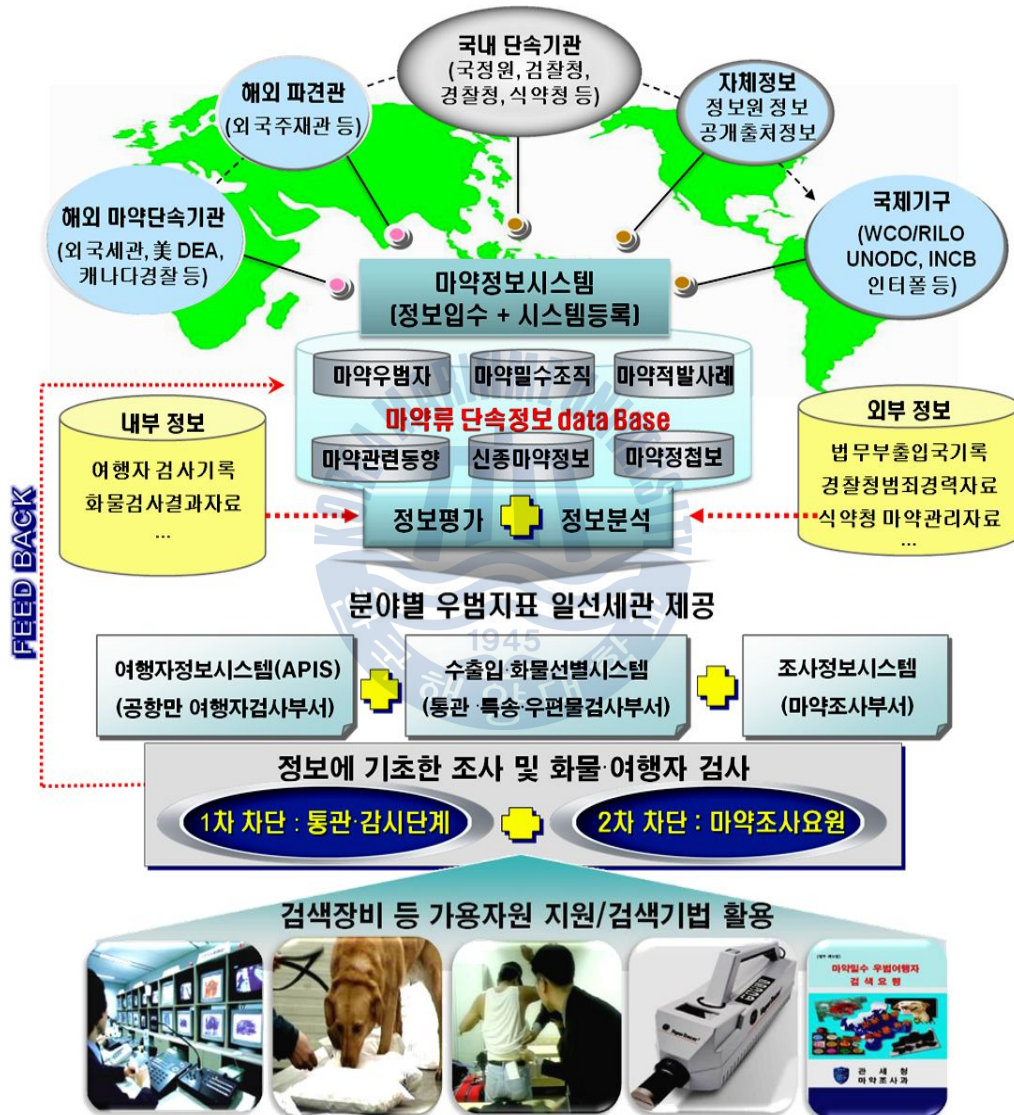
한편, 본청에서는 WCO, RILO, UNODC, 인터폴, 美 DEA, 외국세관 등과의 마약류 범죄관련 정보 교환채널을 통해 최신의 밀수동향을 입수하여 일선세관의

122) 통상 국경을 통과하는 출입국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Immigration)는 출입국 정지여부 등 결격요건 확인업무, 검역소(Quarantine)는 전염병 등 여행자의 질병상태 확인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세관은 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목적이나 마약류·총기·위조상품 등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현행법상 소지가 금지된 물품의 단속을 위해 여행자의 신변용품이나 휴대품 등에 대한 검사권한을 가지며, 마약류 밀수 단속과 관련해서는 삼킴(swallowing), 삽입(stuffing) 등 인체 내 은닉이 의심될 경우 당해 여행자의 동의가 있거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신변검색 영장에 의거 신변검색을 할 수 있다.

123) 프로파일링이란 특징요소를 모은 것으로서 이 요소들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적발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참조하여 밀수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델화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가지고 수출입 화물과 여행자 가운데 밀수의 우범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선별하여 정밀검사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다.(자료: 관세청, 1999. 위험관리기법 실무매뉴얼).

마약조사 요원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중계밀수 등 사안에 따라서는 최종 목적국 단속기관과 공조하여 국제 통제배달 수사를 실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림 13>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단속 체계도



*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재구성

또한, 입수된 정·첩보는 범죄경력자료, 출입국자료, 금융자료 등 외부자료와 관세청 내부의 각종 데이터베이스(Customs Data Warehouse) 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여 정보 특성별로 단속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우범화물 및 여행자의 추적, 감시, 검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마약조사 요원이 아닌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휴대품 검사부서의 직원들은 수출입통관시스템, 여행자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위험 대상을 선별하여 집중 검색하고 있다. 특히, X-ray 검색기, 마약탐지견, 이온스캐너 등 검색장비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여 마약류, 총기류 등 국민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관세국경 통과시점에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단속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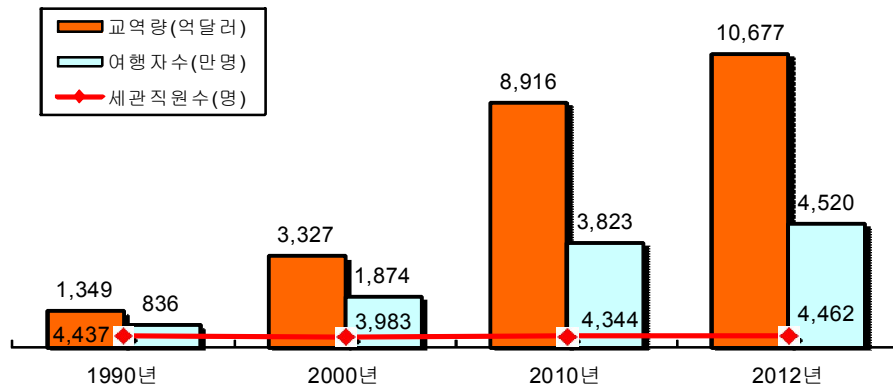
세관은 관세 및 내국세 징수, 수출입물품 처리 등 재정확보와 교역지원 등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마약밀수·테러·탈세·불법 자금세탁·지식재산권 위반 등 국경관련 모든 범죄행위를 자체적으로 또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¹²⁴⁾

최근 무역 자유화(liber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국가간 교역량과 해외여행자 등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선박, 차량, 항공기 및 여행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세관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보다 신속한 통관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과 그 산하 전국세관의 근무인력은 1990년 4,437명에서 2012년 4,462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같은 기간 중 교역량은 1,349억 달러에서 10,677억 달러로 약 8배, 연간 출입국 여행자 수는 836만 명에서 4,520만 명으로 약 5.4배가 증가하였다.

124) 이대복, 2009. 세관역사 한눈에 꿰뚫어 보기, p.179, 도서출판 동녘.

<그림 14> 우리나라의 수출입, 여행자, 관세인력 변화추이



*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관세연감 2011-2012 등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자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과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관세국경 통제를 강화해 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범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관은 신속한 통관과 정확하고 공정한 조세 징수라는 전통적인 임무와 함께, 최근에는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유해한 물품을 관세국경에서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에 보다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여 정보화, 업무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행정영역의 전반에 걸쳐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관리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그 한 예로서 교토협약이 권고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은 우리 세관이 1990년대부터 전산화를 기반으로 하여 도입한 대표적인 세관 통제수단 가운데 하나로, 수출입화물 선별검사(Cargo Selectivity) 시스템과 여행자 선별검사시스템(APIS;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등을 시작으로 여러 분야에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다.¹²⁵⁾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행정은 신속성과 정확성 사이에는 상호 반비례의 이율배반(trade-off) 관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선(線) E1을 E2로 제고하기 위한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단속체계 정비, 위험관리기법과 같은 효과적인 국경통제 수단의 도입 활용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15> 관세행정상 신속과 정확 사이의 Trade-off 관계



3. 마약류 밀수 단속의 당면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마약류 통제전략은 공급차단, 수요감축 및 치료재활 등 세 가지로 대별되며, 국내에서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밀수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최근의 급속한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교역량과 해외여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세국경 통제기관인 관세청은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과 사람의 신속한 통관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마약류

125) 개정교토협약은 1999.6.30일 WCO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6.2.3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현대의 발달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관세행정에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기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밀수 단속과 관련하여 관세행정이 당면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마약류 밀수 단속 전담인력의 부족과 공항만·보세구역으로 제한된 단속 권한 등은 마약류 밀수 단속에 있어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행정 목표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율과 생산·밀수·밀매·소비로 이어지는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밀수동향과 밀수조직 관련 정보를 파악·활용하고, 우범도가 높은 국경통과 화물 및 사람에 대한 선별검사기법 등 위험관리기법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날로 조직화·전문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배후조사 및 불법수익의 몰수를 위한 금융조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마약류 밀수의 운반책과 인수책 등 관련자 검거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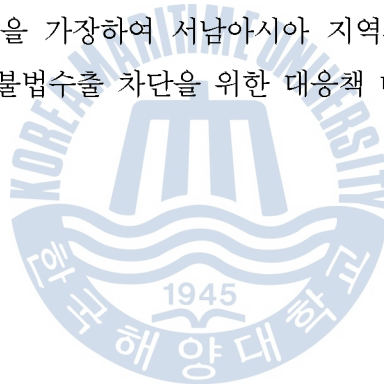
넷째, 마약류 밀수에 이용되는 운반도구와 은닉수법 등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정보력 제고와 위험관리기법 활용 등과 함께 엑스레이 검색기, 이온탐지기, 마약류 탐지견 등 첨단 과학장비의 도입·활용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수출화물·국제우편물·여행자 등에 대한 검색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직원의 마약류 식별능력과 적발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적절한 보상제도의 운영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공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의 운반책과 그 배후조직의 검거를 위해서는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간 밀접한 공조체제 구축과 마약류 단속 부처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업무중복 방지 등 통합 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이 미미한 실정으로 전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마약류 통제정책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국제화·조직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마약류 주요 공급지 단속기관과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합성마약류의 불법 남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단속법규의 미비 등으로 많은 나라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합성대마 등 신종 합성마약류의 밀수가 적발되고 있고 밀수되는 신종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 성분분석, 마약류 지정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마약범죄 조직들은 세계 각지로부터 마약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 물질을 마약류 주요 생산지로 공급하기 위해 밀수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들 마약류 원료물질은 공업용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합법적인 교역을 가장하거나 공업용을 마약류 제조에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 원료물질을 합법적인 수출을 가장하여 서남아시아 지역의 헤로인 생산지로 밀수출 된 사례가 적발된바 있어 불법수출 차단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 5 장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방안

제1절 마약류 단속기능 강화

1. 조직 및 인력 확충

현재 관세청 내 마약류 단속 전담인력은 25명 내외로 검찰 약 250명, 경찰 약 300명 등 타 단속 기관에 비하여 10분의 1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범죄조직 등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약류 공급 차단 및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효과적인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단속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홍콩의 경우 세관 마약조사국(Drug Investigation Bureau) 산하의 마약조사그룹, 금융조사그룹, 원료물질통제그룹 등 3개 조직에 약 250여명이 마약류 범죄 수사, 마약범죄 불법수익 몰수·자금세탁 조사, 마약류원료물질 통제·불법선적 단속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최근 검찰은 마약통제 전략을 국내수요 감축에서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공급 원천차단과 이를 위한 해외 공급거점 국가에 대한 단속기법 지원 등 대외협력 강화로 전환한바 있다.¹²⁶⁾ 이를 감안할 때, 국내 마약류 단속인력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검찰의 마약수사 요원을 전국공항만 거점에 집중 배치하고, 세관·검찰 합동수사팀을 강화한다면 해외로부터의 공급차단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기존 경찰 내 밀수단속 조직을 세관의 마약류 등 밀수단속조직으로 흡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¹²⁷⁾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126) 대검찰청은 아세안 국가들의 승인 하에 아세안지역 마약퇴치 지원을 위한 아세안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07년부터 3년간 900만 불을 지원하였다(출처: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

127) 중국해관의 마약류 밀수단속 조직인 집사국(緝私局: Anti-Smuggling Bureau)은 1999년 1월 신설되어 7,900여명이 본부 12개 처(處), 42개 직속해관 집사국, 127개 산하해관 집사분국 등에서 마약류 밀수

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등으로 병렬적으로 분산·중복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수사 및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밀수, 밀거래, 투여 등 마약류 범죄의 유형에 따라 조직을 특화하여 재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

현재 관세청에 소속되어 관할검찰로부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마약류 단속 전담요원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4조에 의거 공항만과 보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세관에서 자체 적발한 마약류 사건 가운데 공항만과 보세구역에서의 단순 밀수·소지·투약 등은 자체 단독수사가 가능하고,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통해 보세구역 밖에서도 검찰과 합동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⁸⁾

마약류 범죄의 수사는 업무의 특성상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 활동이 중요하여 피의자 검거시 관련정보 확보를 위한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하여 관련조직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긴요하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40% 내외로 타 범죄에 비하여 높아 범죄 경력자 및 관련조직에 대한 정보가 단속업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세관에서 적발한 마약류 사건의 경우 세관 마약조사요원이 통제배달, 위장거래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피의자는 검거 즉시 검찰로 인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과 추가조사 등 기본적인 수사활동에 제약이 있어 관련정보 확보 및 노하우 축적 등이 어렵고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저하되는 사례도 초래되고 있다.

이는 마약류 범죄관련 세관의 수사권 범위를 ‘공·항만과 보세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세관에서 적발한 마약류 밀수 등 사건의 경우 검찰·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경찰조직인公安부(公安部)와 해관총서로부터 이원적인 지휘를 받는다.

128) 관세청, 2012. 대검찰청과 관세청간의 마약수사협력에 관한 합의서(2005.9.21), 조사관계법규집, p.916.

세관합동수사체제를 통하여 세관 특수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관에서 적발한 마약류 사건 관련자와 배후조직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추가수사를 통한 관련정보의 확보 등을 위해 관세청의 마약수사권 확대가 일정부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한 조항 개정을 통하여 마약수사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²⁹⁾

이와 함께 국내 밀거래와 연계된 마약류 밀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이고 원활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3.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개편

관세청은 2004년 9월 마약류의 국내 반입 및 유통 이전에 국경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전략 하에, 종전까지 30여명의 조사요원 중심의 마약류 밀수단속 체계를 X-ray 검색요원·선박 감시요원·관리대상화물 선별직원·휴대품 검사직원 등 기존 1,900여명의 통관·감시직원이 마약류 단속업무에 함께 참여하는 소위 ‘전청적 마약류 단속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¹³⁰⁾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신속한 통관지원, 관세수입의 확보 등 전통적인 임무와 함께 밀수단속, 사회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차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인력이나 조직의 확대 없이 통관·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인력을 마약류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효과적인 조치라고 하겠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전 국가적 거시적 시각에서 관세행정 부문별 주요전략의

1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4호 라목에서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으로 명시하고 있다.

130) 관세청, 2004.9월, 전청적(全廳的) 마약단속체계, 내부보고자료.

우선순위 평가, 조직의 효율성 진단, 단위조직 및 부서별 성과관리 제도의 재평가 등을 통하여, 마약류 밀수 단속업무에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해외 주요 공급원으로부터의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보관리 강화 및 위험관리기법 활용

1. 마약우범자 정보관리 강화

마약류 사범의 높은 재범률, 마약밀수의 국제화·조직화 추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자와 그 관련자 등 우범자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분석·관리가 매우 필요하다.

2012년 세관에서 적발한 전체 마약류 밀수 232건 중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외부기관의 정보에 의한 적발이 5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범칙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636억 원 가운데 외부기관 정보에 의한 적발이 311억 원으로 49%에 달하였는데, 이는 중대형 조직밀수 사건의 경우 정보의 외부기관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으로 자체 정보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체 정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선 마약수사요원들의 사건관련 정보, 화물·우편물·휴대품 검사직원들이 업무수행 중에 습득한 정보 등 내부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해 마약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세관별 정보분석 분야 특화를 통한 분야별 단속정보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과도 마약류 범죄 수사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타 기관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수사가 지연되거나 혐의자 검거에 실패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¹³¹⁾

향후 생산·밀수·밀매·투약 등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131) 조병인, 2003.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pp.120-1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서 검찰·경찰·세관 등 국내 마약류 단속기관 상호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마약류 범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위험관리 기법 활용

관세청은 종래의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과 화물에 대하여 모두 검사하는 전수검사체제에서 위험관리기법에 근거한 법규위반 우범성이 높은 대상만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선별검사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한정된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신속한 물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제를 저해하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관리의 성패는 분야별 잠재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발굴하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불법적 행위의 적발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달려있다.¹³²⁾

관세행정과 관련한 위험이란 국가경제, 국민건강, 사회발전에 손실이나 손상을 가하는 탈세, 불량먹거리·불법물품의 수출입 행위, 밀수, 마약·총기류 등 위해 물품의 불법 반출입 등 관세행정 임무달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³³⁾

마약류 밀수 단속과 관련한 관세행정상의 위험은 합법적인 교역을 가장하여 수출입 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하여 밀수하거나, 일반 여행자를 가장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는 등의 행위,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계지로 악용한 제3국으로의 중계밀수,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수출입 등이라고 하겠다.

최근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일반 수출입화물 등으로 마약류의 밀수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현재 위험관리기법에 근거하여 운용중인 여행자사전

132) 윤남현, 2007. 든든한 관세국경 지킴이 관세청, 마약류과학정보지 The Scientific Information on Drug Abuse, Vol. 5, pp.18-22, 식품의약품안전청.

133) 관세행정 임무란 합법적인 국제무역과 여행자 이동을 원활히 하고, 국가재정과 국민경제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전과 국민생활 위해요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자료: 윤인채, 2012. 「관세행정의 IT 기술 기반 위험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정보시스템(APIIS: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화물선별검사시스템(C/S: Cargo Selectivity)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고, 마약류 밀수 우범요소 발굴을 위한 정보분석 전문요원과 전문조직을 확충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제3절 마약류 수사기법의 개발 활용

1. 관세국경 통제 수사기법 개발 활용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생산, 밀수, 밀매, 투여 등 각 단계별로 특화된 수사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의 경우 마약류의 밀수출입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특화기관으로서 공항만, 보세구역 등 관세국경에서 일어나는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범죄 가운데 밀수와 관련하여 UN의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회원국들에게 국내법에 반영토록 권고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통제배달수사기법(Controlled delivery)이 있다.¹³⁴⁾ 통제배달수사는 마약류 밀수관련 수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사기법 가운데 하나로 마약류 밀수 범죄에 있어 수출입화물, 우편물, 특송화물, 여행자휴대품 등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속에 은닉된 마약류를 단속기관에서 적발했을 경우, 최초 인지단계에서 수취인 등 관련자를 검거하지 않고, 감시 통제 하에 인수책이나 배후자에게 인계되는 최종단계에서 관련자를 일거에 검거하기 위한 특수수사기법이다.¹³⁵⁾

또한, 동 법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을 포함한 마약류 부정거래의 처벌, 마약류 부정거래에 의해 취득한 수익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 재산의 동결 및 몰수, 통제배달 기법의 도입, 범죄인의 인도, 국제수사협력의 강화 등

13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장(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 등의 특례)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와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에 통제배달수사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35) 이인호, 2011. 특수수사기법, 마약조사 및 탐지요원 과정 교육교재, p.273,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마약류 부정거래의 단속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류 범죄 단속기법과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정보나 첩보에 의존하던 수사방법과는 달리, 공항 현장에서 수사관이 직관에 의해 마약사범을 식별하여 기초신문을 통해 검거하는 이른바 'Jetway Interdiction' 수사기법이 있다. 동 수사기법은 1970년대 디트로이트에서 활동하던 마약단속청 수사관 '폴 바크니'가 대부분의 마약사건이 공항에서 적발되는데 착안하여 개발한 것이며, 1975년 이 수사기법을 활용한 마약류 단속 전담조직으로 '디트로이트 공항 마약수사팀'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1996년 동 수사팀(24명)과 로스앤젤레스 공항세관의 기존 단속조직(400명)의 적발실적을 비교한 결과 기존 단속조직은 코카인 40kg, 대마초 160kg, 메트암페타민 5kg을 적발한데 비해, 'Interdiction팀'은 코카인 298kg, 대마초 4.7톤, 메트암페타민 36kg 등 현저한 마약적발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에 미국은 국제·국내 전 공항으로 Interdiction 팀을 확대하였고, 현재는 고속버스와 철도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중이라고 한다.¹³⁶⁾

이와 유사한 마약류 단속기법으로 공항만에서 마약류 밀수 우범여행자를 판별하여 검색하는 기법으로 동태관찰기법이 있다. 이는 마약류 밀수 등 범법자가 공항만을 출입국하면서 세관 검색대를 통과할 때 범법행위나 거짓말을 할 때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심장박동과 호흡의 증가, 아드레날린 분비 촉진, 과장(overplay)되거나 축소(underplay)된 몸짓 등 세관직원 등 검색직원을 속이려 할 때 나타나는 언어적·비언어적 징표를 관찰하여 정밀 검색 여부를 결정하는 기법이다.¹³⁷⁾

이 밖에도 마약류 밀수의 운반수단별 우범성 판별기법에는 인터뷰, 여권·여행 일정·출발지 등 여행자 서류, 선적서류·우편물의 송수하인 정보 등을 활용한 우범성 판별기법이 있다.¹³⁸⁾

136) 국가정보원, 2001. 美 DEA의 Jetway Interdiction: 공항·대중교통 마약수사기법.

137) 김병두, 앞의 책.

138) 한국관세연구소, 1994. 마약실무 핸드북, 관세청.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마약류가 거의 대부분 해외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경우, 공급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키 위해서는 소비되는 마약류가 어디에서 생산되어 밀반입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의 생산지를 추적하는 기법 가운데 하나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마약류 프로파일링 또는 마약류 지문감정기법이다.¹³⁹⁾

호주 연방경찰청은 주로 밀반입되는 헤로인과 코카인에 대하여 원산지 추적을 목적으로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국경을 통한 마약류의 밀수·밀매 단속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태국도 법무부 마약단속위원회 산하 연구소인 'Narcotic Analysis & Technical Service Institute'에서 마약류 원산지 추적 등 마약류 단속을 위해 마약류 프로파일링을 수행하고 있다.¹⁴⁰⁾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의 마약지문감정센터,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 마약분석팀 등이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마약류에 대한 분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¹⁴¹⁾

이들 전문기관은 마약류 성분, 순도 등 단편적인 분석에 머물 것이 아니라, 메트암페타민 등 주요 마약류에 대한 원산지 추적을 위한 지문감정 분석을 강화하고, 분석기관 상호간 축적된 분석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마약류의 유통 경로 등을 국내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마약류 단속기법들은 관세국경에서 마약류의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매우 긴요한 것들로, 국제범죄 조직들의 마약류 밀수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여 더욱 정밀하게 발전시켜 가야만 할 것이다.

139) 마약류 지문감정 기법은 마약류의 고유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마약류 제조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종류나 제조방법, 더 나아가 원산지, 유통경로 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하는 신개념의 감정기법이다(자료: 서승일 등, 2008. 마약지문감정의 활용과 5년 성과분석 연구, 한국법과학회지 제9권 제1호, pp.33-38).

140) 이성준 등, 2007. 「마약프로파일링 기법 연구」, 호주·태국 경찰청 합동실무연수 보고서.

141)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분석과는 1989년(마약분석실로 발족하여 2009년 3월부터 마약프로파일링 감정업무 시작), 대검찰청 마약지문감정센터는 1997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마약분석팀은 2005년에 각각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www.nfs.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및 관세청 내부자료)

2. 금융수사기법 활용

범죄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전략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자금차단에 장애로 작용하는 이른바 돈 세탁 행위를 규제하는 문제가 현실적 전략전술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돈 세탁이라는 용어는 본래 미국의 마피아 조직이 마약류 판매수입을 현금 위주의 세탁소 운영수입에 포함시켜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으로 자금 출처를 위장시키는 수법을 이용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각종 범법행위나 부정부패를 통해서 취득한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¹⁴²⁾

돈세탁의 수법은 크게 현금물치운반, 금융기관 이용, 물품거래 이용, 지하금융제도를 통한 송금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배치(Placement), 반복(Layering), 통합(Integration)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배치단계란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취득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의 물리적 은닉, 국외운반, 소재이전, 혼합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반복단계란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에 입출금을 반복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불법자금으로 의심받을 여지를 없애는 것이며, 통합단계란 출처가 위장된 자금을 외관상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¹⁴³⁾

우리나라는 1995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마약관련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한편, 1998년 마약거래에서 발생한 불법수익의 추적·동결·몰수, 범죄인의 국가간 인도 등을 명시한 UN의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효과적인 국제

142) 조병인, 2003. 캐나다의 불법수익 몰수체계 연구, p.5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돈세탁이라는 용어는 본래 미국의 마피아 조직이 마약판매 수입을 현금 위주의 세탁소 운영수입에 포함시켜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위장시키는 수법을 이용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각종 범법행위나 부정부패를 통해서 취득한 불법자금을 금융기관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43) 조병인, 2003.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pp.75-7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에그몽 그룹,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기구를 통하여 국제적인 자금세탁의 추세와 조사기법을 파악·활용하고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제4절 단속 장비의 현대화와 단속마인드 제고

1. 마약류 단속장비 현대화

마약류 밀수가 전문화 조직범죄화 됨에 따라 마약류 밀수에 이용되는 은닉 수법도 더욱 치밀하고 지능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 등 단속기관은 은닉된 마약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 마약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장비, 검색장비 및 분석장비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세관은 마약류 단속을 위해 마약 탐지견, 이온스캐너(ion-scanner), X-ray 검색기, 컨테이너검색기, 신변검색기 등 장비를 주요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여 사용하고, 적발된 마약류 의심 물품을 분석하기 위해 관세청 소속 중앙관세 분석소와 주요 세관 분석실에 마약류 분석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¹⁴⁴⁾

관세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안전 확보를 위해 1987년 7월 미국 관세청 으로부터 폭발물 탐지견 6두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1990년부터 마약탐지견을 양성하여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전국 8개 공항만 세관에서 약 30두의 마약탐지견을 운영 중이고, 30여두는 마약탐지견센터에서 상시 교체투입이 가능토록 훈련을 하고 있다. 탐지견은 인간 보다 후각 능력이 크게 뛰어나 막대한 반입량의 우편물·특송화물 등에 대한 마약류 탐색업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¹⁴⁵⁾

144) 관세청이 운영 중인 조사감시 장비는 X-ray 검색기, 차량형 검색기, Body Scanner, 금속 탐지기, 마약 폭발물탐지기, CCTV 카메라 등으로 출입국 여행자의 수화물과 신변에 은닉된 마약류 등을 색출하기 위해 주로 공항만 세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자료: 관세청, 2011. 관세연감).

앞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마약류 밀수 경로의 다변화, 은닉수법의 지능화 등 마약류 밀수 단속업무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짧은 시간 내에 마약류를 식별하고 검색할 수 있는 최첨단의 마약류 탐지장비, 식별 시약, 분석장비 등을 도입하고, 마약류 탐지견의 적발능력 제고와 특정 마약류 전담견을 육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세관직원의 마약류 단속마인드 제고

과거에 마약류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제우편물 등을 통하여 가정 주부, 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의 불특정 다수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약밀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밀수루트 또한 여행자, 수입화물,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등으로 다원화됨에 따라 소수의 마약류 단속 전담인력만으로는 공항만 등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우범 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감시 단속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05년부터 전체직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수출입물품 통관, 여행자휴대품검사, 공·항만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세관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입체적인 마약류 단속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바 있다.

실질적으로 관세국경에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수출입화물, 운송수단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세관공무원을 마약류 단속 전문 요원화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해악성과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분야별 단속기법 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마약류 밀수단속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단속 동참을 유인하는 제도와 함께, 성과관리 제도상 마약류와 같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반출입 단속 관련지표의 가중치를 높이는 등의 조치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45) 홍도교, 2011. 마약 탐지견의 이해, 마약조사·탐지요원과정 교재, p.380,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5절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1. 국내기관과의 공조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협력은 조직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첨단 단속장비 도입 등과 함께 마약단속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약범죄는 국외 공급조직, 밀수조직, 국내 판매조직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세국경에서의 밀수차단과 함께 국내조직 검거를 위한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이 1만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산 마약류의 밀수입과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중계밀수의 증가 및 비만치료제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남용 만연 등의 현실은 마약류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단속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 경찰,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마약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수이고, 각 기관별로 밀수 등 공급차단, 국내생산 및 밀거래 단속,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관리 통제, 남용자의 치료·재활 등 마약류 범죄의 양태별로 단속분야를 달리하고 있어 생산, 공급, 유통, 소비 등 일련의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밀반입 경로와 밀수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한 양상을 보이는 국제 마약범죄조직의 대형 중계밀수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약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마약류 밀수의 운반책뿐 아니라 그 배후조직까지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검찰·경찰·세관 등 공급차단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간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¹⁴⁶⁾

그런 의미에서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사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과

146) 조병인 외 3인, 2010.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p.23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세관·마약수사공조회의 등은 국내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마약류 단속체계를 확립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또한, 최근 검찰은 중국발 특송화물이 증가한 김포공항을 이용한 중계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 3월 4일 김포국제공항분실을 개소하고 세관과 공조하여 마약류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마약류 밀수 형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¹⁴⁷⁾

현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단속기관간 마약류 통제에 관한 종합적인 협의·조정 역할이 요구되나, 마약류 범죄의 국제화·광역화·조직화에 대응하여 마약류 단속 부처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공조 등을 위한 기능은 원활히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⁴⁸⁾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약류 단속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과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서 국가마약류 통제 기본전략 수립, 단속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조정 권한 부여 등 마약류대책협의회는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각 기관별로 분산된 마약류 단속 및 통제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은 오히려 당해 기관별로 특화된 전문성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 유관업계와의 협력 강화

마약류 밀수는 다양한 국제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항공사, 여행사, 무역업체, 선박회사, 관세사, 보세구역 관련업체 등 유관업체들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정보는 마약류 밀수 단속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

UN의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은 운송 수단이 마약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세관당국과 운송업자들 간에 특정 협정·

147) 김포세관, 2013. 서울중앙지검 김포분실 개소 동향보고, 2013.2.28.

148)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제2조(기능)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관련 기관간 협조, 그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의·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각서·약정의 체결, 마약밀수 예방을 위한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화물 명세서 사전제출, 우범화물에 대한 신속한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협력이사회(CCC)¹⁴⁹⁾는 국제조직범죄의 성격을 띠는 마약류 범죄의 단속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역관련 업계와의 협조가 절대적임을 인식하고, 1985년부터 국제민간인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마약류 단속 노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¹⁵⁰⁾

또한, WCO 제22차 감시위원회(Enforcement Committee)에서는 급격한 국제 무역과 교통량의 증가에 편승하여 국경을 테러 등 넘나드는 조직범죄의 위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세관, 국내 유관기관 및 국내 범 집행기관들과의 정보 교환 등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세계정보전략(GIIS: Global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trategy)'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에게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GIIS의 내용 가운데 정보의 기능과 범위, 정보수집의 방법과 도구 등에 관한 조항에서 세관 당국의 인적 물적 가용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국경범죄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키 위해서 무역 관련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정상적인 무역행위를 위협하는 국경범죄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¹⁵¹⁾

유럽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럽 내 마약류 현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럽의 마약시장이 과거에 비해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주된 요인으로 복합적인 마약류 취급, 밀거래 방식의 다양성, 컨테이너·특송화물·우편물 등 합법적 운송수단의 활용

149)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는 국제연합의 정부 간 기구 중 하나로 유럽관 세동맹으로 형성된 각국의 통관제도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여 관세장벽을 없애고 국제무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52년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 유럽의 17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첫 이사회가 열렸고, 1994년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50) 임대환, 2001. 마약 밀수실태와 조사제도 및 기법, pp.127-128, 도서출판 협동문고.

151) WCO Enforcement Committee 22nd Session, 2003.1.14. Global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trategy(Document No. EC0132E1), Chapter IV Intelligence Functions and Range of Information Gathering Techniques and Tools, Memorandum of Understandings(MOUs).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정보 분석을 기초로 고수익 창출 범죄 및 조직 집중단속, 범죄자금 흐름 차단, 마약류 밀거래의 상업적 유통 경로 차단을 위한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¹⁵²⁾

특히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밀거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온라인 마약시장에 대한 정보 파악과 신용카드 회사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 차단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항공사의 탑승자내역정보, 선박회사의 화물반출입 정보, 특송업체의 특송화물 내역정보 등을 관련업체로부터 사전에 전자 자료로 제출 받아, 위험관리기법에 따라 우범화물이나 우범여행자의 선별검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밀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마약류의 주된 밀거래 및 밀반입 경로가 되는 여행자, 특송화물, 우편물 등의 검색을 담당하는 세관직원 및 관련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마약류 적발기법 교육과 훈련과 검색체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외국 단속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최근 마약류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국제화 조직범죄화 되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메트암페타민 등 거의 대부분의 마약류가 해외로부터 밀수입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외국의 마약류 단속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마약퇴치에 적극 앞장서기 위해 세계합성마약감시프로그램인 Global SMART Programme¹⁵³⁾의 발족을 후원하고

152)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2013. EU Drug Markets Report/A Strategic Analysis, Europol, Hague, the Netherlands (성태곤, 「EU 집행위 EU의 마약시장 분석 보고서 발간(2013.2.7),駐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보고자료」 재인용).

153) SMART(Global Synthetics Monitoring: Analyses, Reporting and Trends)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지역의 암페타민계 마약류(ATS)의 불법 생산·밀수·남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2008.9월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주관으로 한국·호주·일본·뉴질랜드·태국이

참여하였으며, 대검찰청은 우리나라로의 마약류 주요 공급원이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마약퇴치를 위해 2007년부터 아세안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¹⁵⁴⁾은 2006년 7월에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수출입과 전용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Operation Cohesion과 Project Prism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마약퇴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2012년 세계관세기구 산하의 관세국경범죄 관련 아태지역의 정보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아태지역정보센터(RILO AP)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동 기구는 전 세계 세관당국과 정보연락망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마약류 주요 공급원이 되는 관련국의 동향 파악 및 공조수사 등 실질적인 정보협력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마약류 밀수출입의 공급지·중계지·최종목적지 등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나라들과도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세관협력협정이나 해외주재관 등을 통한 정기적인 정보교류와 사안별 공조수사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6절 신종 마약류 출현에 대응한 신축적 대응

최근 신종 마약류의 사이버 밀수 및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요 반입 마약류는 스파이스, 칠 등의 이름으로 거래되는 합성 캐나비노이드 계통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식약청은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합성 카나비노이드인 'JWH-018 및 그 유사체'와 'JWH-250 및 그 유사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¹⁵⁵⁾

기금 제공하여 발족한 프로그램으로, 브루나이·캄보디아·중국·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1월에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자료: UNODC, www.unodc.org/unodc/en/scientists/smart.html).

154)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었다.

15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마약류 과학정보지, Vol.9. pp.14-27.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JWH-018 및 그 유사체는 naphthoylindole 계열이고 JWH-250 및 그 유사체는 phenylacetylindole 계열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호주 등에서도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현행 법률상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에 대해서 신속히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2011년 9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¹⁵⁶⁾

이 제도는 신종 마약류를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 관리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시 마약류는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또는 제공·재배·운반·보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미리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 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¹⁵⁷⁾

외국의 경우, 새로 출현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 system), 선제적 통제(Proactive control), 위험도평가(Assessing the risks), 감독 하의 신종 마약류 신속지정 시스템(Faster processes but supervised)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유럽마약·중독모니터링센터(EMCDDA)는 신종 마약류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 사항으로 신종마약류 출현의 신속한 확인, 위험도 평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신속한 법규화, 법적 통제와 함께 유해물질 남용방지 프로그램의 병행,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이나 약사법 등 기존체계를 활용한 불법남용 억제 등을 권고하고 있다.¹⁵⁸⁾

156) 2011.6.7일자로 신설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 등”이라 한다) 가운데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57) 김희선, 앞의 발표자료.

제7절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출입 효과적 차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수수·매매 등에 대한 감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고, 세관은 불법 수출입 관련 단속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원료물질의 밀수출입시 다른 품명으로 신고하거나 공식 화학명이 아닌 솔벤트, 시너 등 일반명칭을 사용하여 세관은 이들 원료물질의 불법 수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의 밀수출입을 적발했더라도 마약류 제조에 불법 전용할 것이라는 사실입증이 어려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관세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국경에서 합법을 가장한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수출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Operation Cohesion, Project Prism 등 마약류 원료물질 국제 통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국내 단속기관과 합동으로 밀수출입이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속 등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자료와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대조하여 미승인 수출입 등 불법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수출입전자통관시스템, 화물선별시스템 등 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의 선별기준에 마약류 원료물질 관련 우범지표를 발굴하여 반영함으로써,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출입을 선별하여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58)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2011. Responding to new psychoactive substances, Drugs in focus 2nd issue 2011(www.emcdda.europa.eu/news/2011/12).

제 6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마약류는 오랜 옛날부터 종교 의식용이나 질병 치료용 등 인류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인적 쾌락을 위한 무분별한 오남용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마약류 밀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수익은 전 세계 총 GDP의 0.6~0.9%에 달하며, 범죄조직은 이를 기반으로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마약류 범죄퇴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마약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단속기관의 형사사법 비용이 연간 각각 약 2조5천억 원 및 715억 원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 사범수는 연간 1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약류 범죄 및 밀수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폭력조직의 마약류 밀수 및 밀매 개입 증가, 높은 재범률,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증가, 마약류 밀수루트의 다변화, 밀반입 수단의 다양화, 우리나라를 경유한 제3국으로의 중계밀수 증가, 신종 마약류와 외국인 마약류 밀수의 지속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밀수 규모나 남용률 등은 유럽이나 미주 등에 비하여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메트암페타민 등 기존 마약류와 함께 신종 마약류 밀수 지속, 공급루트 다변화, 사용계층 확산, 국제범죄 조직에 의한 중계밀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마약 청정국’이라는 국제적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한편,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선박, 차량, 항공기 및 여행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통제하는 세관 등 정부기관의 가용자원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경

통제기관들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으로 보다 빠른 물류의 촉진과 마약류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밀반입되어 공급되고 있는 현실과 밀거래·투약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비용을 고려할 때,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내시장으로의 공급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마약류 범죄 대응전략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역량과 해외여행자의 급증 등 환경 변화와 이에 편승하여 지능화·국제화·조직화 되고 있는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마약류 단속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단속인력 확충, 마약류 주요 반입 경로별 마약류 단속 전담조직의 신설,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팀 구성 및 단속기관간 수사권 범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여러 수사기관이 보유한 마약류 범죄 관련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세관은 신속한 물류흐름과 불법 마약류의 효과적 차단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고위험 화물과 여행자를 선별·검사하는 프로파일링 및 타겟팅 기법 등을 적극 개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통제배달수사기법, 위장거래수사기법, 금융거래 수사기법, 동태관찰기법, 인터뷰기법, 지문감정기법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출입화물·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 등 밀수 경로별 검색기법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넷째, 최첨단의 마약류 탐지장비·식별시약·분석 장비의 도입, 마약탐지견의 적발능력 제고, 마약조사요원의 수사역량과 함께 수출입물품·우편물·특송화물·여행자휴대품 검사직원, 공·항만 감시직원 등에 대한 마약류 단속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 노력도 중요하다.

다섯째, 생산·공급·유통·소비 등 일련의 조직화된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국내 마약류 범죄 단속기관 상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마약류 범죄의 국제화·조직화에 대응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합동단속 등 실질적인 협력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신종 마약류 밀수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의심 품목 적발시 위험도 평가, 조기경보 및 마약류 신규지정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이나 약사법 등 기존체계를 활용하여 마약류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방지를 통하여 불법 마약류의 생산을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마약류 원료 공급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불법 마약류 퇴치에 앞장서는 진정한 ‘마약청정국’의 이미지를 재차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불법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방안들은 세계 마약류 생산 및 밀수 동향, 국내외 마약류 범죄 실태, 단속 기관별 밀수·밀거래·투약 등 마약류 범죄 유형별 단속여건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단속환경에 따라 신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전 세계 나라 상호간 인적, 물적 교류는 갈수록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이에 편승하여 인신매매·테러·밀수·마약류 밀수 등의 범죄도 나날이 국제화 조직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 화물, 운송수단 등에 대한 안전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소 등 국경관리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장되고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서는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과 사람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관의 마약류 공급차단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생산, 운반, 밀매, 소비 등 순환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여러 가지 양태 가운데 해외로부터 국내로의 밀수에 초점을 두고, 관세 국경을 통한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따라서 마약류 밀수와 함께 마약류 범죄의 주요 양태인 마약류 불법생산, 밀거래, 불법투약,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과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또한, 마약류의 공급 차단 측면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검찰·경찰·식품의약품 안전청 등 여타 단속기관의 국내 투약범죄 등에 대한 단속실태나 단속전략에 대한 고찰은 당해 분야 전문가나 식견 높고 열의에 찬 후학에게 미루기로 하였다.

한편, 공급 차단과 함께 마약류 대책의 다른 한 축인 수요 감축과 관련해서는 마약류 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재활의 기초가 되는 마약류 남용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서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국내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불법 마약류의 오남용과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마약류 관련 정책과 단속전략은 마약류 문제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 하여, 통합적·전략적 차원에서 수립·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마약류 공급차단을 위한 관세국경 관리방안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서 불법 마약류의 오·남용이 없는 건강하고 활력에 찬 사회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주경야독하며 대학을 졸업한지 20여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사람의 도리에 두루 힘쓰고 ‘여력이 있거든 학문을 하라(行有餘力 則以學文)’는 옛 성현의 말씀과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며 공부를 뒤로 미루고 멀리해 왔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공직에 입문한지 26년째인 지난 2011년 초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부산세관과 한국해양대학교가 산학협력프로그램으로 공동 개설한 국제관세학과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은 오랜 마음의 빛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주위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기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의 경영, 물류 및 국제경제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더불어 올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해 주신 김재봉, 김환성, 유일선, 박규석, 정홍열 교수님, 그리고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용존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공무에 지친 몸으로 밤늦게 바다 내음 그윽한 대한민국 제일관문(第一關門) 부산세관의 강의실을 함께 지킨 국제관세학과 3기생 여러분들께도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움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 행복했고 고마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홀로 계신 어머니와 부족한 가장을 불평 없이 옆에서 든든히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티 없이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평소 시간을 소중히 하고 정려하여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 하면서, 불민하고 부족한 자식을 언제나 한결같이 믿어주고 자랑스러워해 주셨던 선친께 삼가 머리 숙여 이 논문을 바칩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2010.
- 고필형, 2011. 비범죄화 경향 비교연구: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집, p.334, 법무연수원.
- 관세청, 2006. 국제 마약원료물질 통제프로그램 가입, 언론보도자료(2006.7.10).
- , 2013. 국제범죄 단속동향 및 국내외 적발사례(2012-12월호).
- , 2012. 대검찰청과 관세청간의 마약수사협력에 관한 합의서(2005.9.21), 조사관계 법규집.
- , 2007. 세관직원이면 꼭 알아야할 마약상식, 서울, 협동문고.
- , 1999. 위험관리기법 실무매뉴얼.
- , 2010-2013.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서울, 협동문고.
- 국가정보원, 2001. 美 DEA의 Jetway Interdiction: 공항·대중교통 마약수사기법, 국제 범죄정보 자료집.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1. 국내 양귀비 현황 및 종식별.
- 국제범죄정보센터, 2011. 마약류 용어해설, 국가정보원.
- 권수진, 신의기, 2006.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총서 06-48,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권오성, 서성아, 김윤수, 2005.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병두, 2006. 마약단속의 이해, 관세공무원 교육교재, 관세청.
- 김수진, 2007. 약물 남용과정 유형별 성격기질 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창윤, 2011. 한국의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 경찰학 논총 제6권 제1호, p.316, 경찰학연구소.

- 김포세관, 2013. 서울중앙지검 김포분실 개소 동향보고(2013.2.28).
- 김희선, 2012. 마약류 관련제도 소개,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2012.10.26) 발표자료.
- 노시교, 이병진, 김용원, 2009. 정보분석기법 및 위험관리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
관련 해외출장보고, 관세청.
- 대검찰청, 2012. 2011 마약류범죄백서.
- _____, 2013. 마약류 월간동향 2012년 12월호.
- _____, 2013. 2012년도 마약류사범 단속결과, 언론보도자료(2013.1.28).
- 모이세스 나임(Moises Naim), 이진 譯, 2007. 불량 경제학(Illicit: How Smugglers,
Traffickers, and Copycats Are Hijacking the Global Economy), 청림출판.
- 박광섭, 박행렬, 2007. 범죄 이론과 정책,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 박성수, 2011.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 개선방안, 矯正研究 제50호, p.201.
- 박성수, 김우준, 2009. 주요국가 마약류 감시단속기관 체계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p.151.
- 박성수, 박영주, 2010.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형사사법비용에 관한 연구, 矯正研究
제49호, p.194.
- 박성훈, 장안식, 이재경, 2009.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 추세(1966-2007), 사회연구 통권
18호(2009년 2호), p.54.
- 박의철, 2004. 해상밀수차단을 위한 광역감시체제 구축연구, 국외단기훈련보고서,
중국북경 중앙민족대학.
- 배성태, 2011. 마약류 실체, 서울, 도서출판 조은.
- 배향자, 2007. 고려 및 조선역사에 나타난 마약관련 기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성대학교.
- (사)소비자시민모임, 2008. 비만치료제 소비자행태조사 및 효율적 사용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 서승일, 고범준, 서용준, 인문교, 2008. 마약지문감정의 활용과 5년(2003~2007) 성과분석

- 연구, 한국법과학회지 제9권 제1호, pp.33-38.
- 성태곤, 2013. 「EU 집행위 EU의 마약시장 분석 보고서(2013.2.7)」, 駐 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 마약류 과학정보지, Vol. 9, pp.14-27.
- 신의기, 2003.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11.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pp.272-27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영철, 200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 오기완, 2010. Opioids: Blessing and Curse, 2010년 마약류과학정보연구회 세미나 발표자료(2010.9.7).
- 원사덕, 2003. 효율적인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성대 국제대학원.
- 유영환, 2013. UNODC 2012 아태지역 마약동향 보고서,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 윤남현, 2007. 든든한 관세국경 지킴이 관세청, 마약류과학정보지 The Scientific Information on Drug Abuse, Vol. 5, pp.18-22, 식품의약품안전청.
- 윤인채, 2012. 「관세행정의 IT 기술 기반 위험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배재대학교.
- 이대복, 2009. 세관역사 한눈에 꿰뚫어 보기, 도서출판 동녘.
- 이득수, 1996. 마약류 밀수단속의 관리개선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이성준 등, 2007. 마약프로파일링 기법 연구, 호주·태국 경찰청 합동실무연수 보고서.
- 이영제, 2003. 마약류 범죄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 대마 범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광운대학교.

- 이인호, 2011. 특수조사기법, 마약조사·탐지요원과정 교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이창기, 2004. 마약 이야기,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대환, 2001. 마약 밀수실태와 조사제도 및 기법, 서울, 도서출판 협동문고.
- 장광현, 2009. 최근 마약류 밀수동향 및 통관의 적법성 확인과 관세사 역할, 계간 關稅士 2009년 여름호, pp.22-28, 한국 관세사회.
- 정진곤, 2003. 금융수사의 이해, 국제범죄와 특수조사실무, 관세청.
- 조병인, 2003.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2003. 캐나다의 불법수익 몰수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 박광민, 최응렬, 김종오, 2010. 국내거주 외국인의 조직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성권, 2012. 마약의 역사, 서울, 인간사랑.
- 조은석, 김광준, 200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C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중앙관세분석소, 2006. 마약 핸드북, 관세청.
- 한국관세연구소, 1994. 마약실무 핸드북, 관세청.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12. 아름다운 젊음, 2012 Winter Vol. 67, pp.12-14.
- 헌법재판소, 20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사건번호: 2005헌바46 전원재판부).
- 홍도교, 2011. 탐지견의 이해, 교육교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홍순오, 2006. 세관 정·첩보과정 교육자료, 국가정보대학원.

2. 외국문헌

- Amera-Chem, Inc., 2011, Drug Identification Bible 2011 Edition, Colorado, USA.
- Beau Kilmer, Jonathan P. Caulkins, Rosalie Liccardo Pacula & Peter H. Reuter, 2012. The U.S. Drug Policy Landscape: Insights and Opportunities for

- Improving the View, RAND Drug Policy Research Center, p.10.
- CATO Institute, 2009. Drug Decriminalization in Portugal, Washington, D.C.
- Count The Costs(www.countthecosts.org), 2011. The War on Drugs: Creating crime, enriching criminals, trafficking in methamphetamine by air passengers, WCO document EN-16.01.2013.
- European Commission, 2011.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the assessment of the functioning of Council Decision 2005/387/JHA on the information exchange, risk assessment and control of new psychoactive substances, Brussels.
-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2013. EU Drug Markets Report/A Strategic Analysis, Europol, Hague, the Netherlands.
- Haken, Jeremy, 2011. 'Transnational Crime In The Developing World, Global Financial Integrity', Washington, D.C.,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 INCB, 2006.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Report 2006', Vienna, Austria.
- Japan Customs, 2012. Trends of Illicit Drug Smuggling in Japan.
- John Jiggins, 2005. The Cost of Drug Prohibition in Australia, School of Humanities and Human Service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 June S. Beittel, 2012. Mexico's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s: Source and Scope of the Rising Violen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Leo W.S. Sin, 2005. FLECC Meeting(2005.4.11-13, 中國 雲南省 麗江)발표자료, Hong Kong Customs and Excise.
- Masahiro KIKUCHI, 2012. Japan's seizures based on timely analysis & sharing of information from overseas counterparts, Japan Customs, 24th RILO NCP Meeting(31 Oct-2 Nov 2012, Jaipur, India).
- National Narcotics Control Commission, 2012. 'Country Report for SMART Programme', UNODC Global SMART Programme(Synthetics Monitoring:

- Analyses, Reporting and Trends Programme) Regional Seminar (2012.7.24~25, Phnom Penh, Cambodia).
- Norval Morris & Gordon J. Hawkins, 1970. The Honest Politician's Guide to Crime Control, The University of Chicago, U.S.A.
- Office of Narcotics Control Board, 2012. Thailand Narcotics Control Annual Report 2011. Ministry of Justice, Thailand.
- ONCB(Office of Narcotics Control Board), 2013. Opium Cultivation and Eradication Report for Thailand 2011-2012.
- ONDCP(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2012. '2012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 Thai Customs Administration, 2012. Thailand's Asia Pacific Customs News Issue 40.
- UN, 2000.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nex I, Article 2. Use of terms.
- 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11-15 March 2013), 2013. World Situation with regard to drug trafficking, Vienna, Austria.
- UNODC, 2011. Amphetamines and Ecstasy, 2011 Global ATS Assessment, Global SMART Programme.
- UNODC, 2011. Estimating illicit financial flows resulting from drug trafficking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Vienna.
- UNODC, 2012. World Drug Report 2012, Vienna, Austria.
- UNODC Global SMART Programme, 2012. Patterns & Trends of Amphetamine-Type Stimulants and Other Drugs: Asia and the Pacific 2012, Bangkok, Thailand.
- USA ONDCP, 2011. 'Newsletter of th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Volume 2, Issue 5.

USA ONDCP(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2012. 「2012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WCO, 2013. Operation WESTERLIES Final Report; A joint enforcement operation against illicit trafficking in methamphetamine by air passengers, WCO document EN-16.01.2013., Brussels, Belgium.

WCO Enforcement Committee 22nd Session, 2003.1.14. Global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trategy(Document No. EC0132E1).

WCO RILO AP(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2004. Monthly Bulletin, April 2004 Issue No. 196, p.5.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Geneva.

Yuko Nakanodo, 2012. Intelligence Activities of National Intelligence & Targeting Center, Japan Customs, RILO AP Seminar on CEN & Intelligence Analysis(10-13 July 2012, Seoul).

3. 인터넷 자료

두산백과 인터넷 doopedia(www.doopedia.co.kr), '신농본초경', 2013.2.8.

마약류대책협의회 홈페이지(team.mw.go.kr), '마약류대책협의회 구성', 2013.3.28.

법률신문 인터넷(www.lawtimes.co.kr), 2013. 「'성매매 여성차별법' 위헌제청」 언론보도 내용(2013.1.9).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20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www.justice.gov/dea/resource-center/statistics.shtml).

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homepage(www.egmontgroup.org).

El Paso Intelligence Center, National Seizure System.

Financial Action Task Force homepage(www.fatf-gafi.org).

Korean Help Association Homepage (koreanhelpassn.org).

ONDCP, 2012. ONDCP Homepage(www.whitehouse.gov/ondcp).

USA ONDCP, 2012. ONDCP Homepage(www.whitehouse.gov/ondcp).

WCO, 2012. 「Customs operation nets exceptional quantities of drugs in postal parcels」,

WCO (www.wcoomd.org) press release(20 November 2012), Brussels, Belgium.

World Bank homepage(<http://data.worldbank.org/country/united-states>).

